

2009 추계 정기 학술 발표회

법치주의와 학교 법교육의 과제 I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

- 일시 : 2009. 10. 24(토) 13:30 - 19:30
-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시청각실(104호)
- 주최 :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한국 초등도덕교육학회
서울교대 법교육연구소
- 후원 : 법무부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한국 초등도덕교육학회
서울교육대학교 법교육연구소



행 사 프 로 그 램

1부: 개회식

사회 : 이대성(고양 행신고,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사무국장)

- 개회선언 사회자
- 국민의례 다같이
- 개회 인사 및 내빈 소개..... 허종렬 회장(서울교대), 조강모 회장(광주교대)
- 축사..... 주철현(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기조발제 : 법치주의와 헌법 교육의 중요성.....
..... 발표 : 김운용(한국공법학회 고문, 성균관대 명예교수)

2부: 초등학교 헌법교육 개선 방안 및 교재 개발의 방향

사회 : 오동석(아주대,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이사)

- 주제발표 1 : 초등학교 헌법 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 발표 : 허종렬(서울교대), 토론 : 안주열(서남대)
- 주제발표 2 : 주요국의 초등학교 헌법교육 동향 비교.....
..... 발표 : 이지혜(서울 대림초), 토론 : 심옥령(덕성여대)
- 주제발표 3 : 초등학생을 위한 헌법교육 교재 개발의 방향.....
..... 발표 : 권혜정(서울 상원초), 토론 : 이완식(법무부 법교육팀 검사)

3부: 초등 도덕 교육에서의 법 관련 교육 강화 방안

사회 : 조강모(광주교대, 한국 초등도덕교육학회 회장)

- 주제발표 1 : 초등 도덕과에서 정보윤리 및 저작권 보호 교육의 개선 방향
..... 발표 : 유병열(서울교대), 토론 : 박의섭(서울 봉천초)
- 주제발표 2 : 초등 도덕교육에서의 준법 교육 강화 방안.....
..... 발표 : 서강식(공주교대), 토론 : 김항인(경인교대)

4부 : 폐회식 및 만찬

- 폐회사..... 학회 회장

목 차

<인사말씀>

인사말씀..... 허종렬 · 조강모

<기조발제>

법치주의와 헌법 교육의 필요성..... 김운용(1)

<주제발표 I : 초등학교 헌법교육 개선 방안 및 교재 개발의 방향>

초등학교 헌법 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허종렬(5)

주요국의 초등학교 헌법교육 동향 비교..... 이지혜(25)

초등학교 헌법교육 교재 개발의 방향..... 권혜정(35)

<주제발표 II : 초등 도덕 교육에서의 법 관련 교육 강화 방안>

초등 도덕교육에서 정보윤리 강화 및 저작권 보호 교육의 방향...유병열(47)

초등 도덕교육에서의 준법 교육 강화 방안.....서강식(73)

인사 말씀

존경하는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법과 인권 및 도덕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와 직무에 종사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술 발표회는 「법치주의와 학교 법교육의 과제 1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서울교대 법교육연구소의 제안에 따라 한국 법과 인권교육학회, 한국 초등도덕교육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을 통한 인권 보장과 준법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이기에 이를 지켜 나가기 위해선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보다 내실 있는 법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헌법교육은 그것이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국내법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학회가 지향하는 법과 인권교육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2007 개정 도덕과교육과정에서 법과 관련된 정보윤리교육과 저작권 교육을 강화함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도 함께 다루었으면 하는 교육현장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 법교육연구소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법무부의 연구사업을 수주 받아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 학술발표회를 위의 두 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 학술 발표회도 학술적 논의 차원을 뛰어 넘어 학교 교육현장의 실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물론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더욱 많은 관심과 격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학회는 작년 9월 6일에 창립된 이후 벌써 250여명의 회원을 확보함은 물론 세 번째 학술발표회를 갖고 매월 연구 포럼을 개최해 왔으며, 통권 제3호의 학회 논문집을 간행하는 실적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땅에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본 학회와 관련 있는 정부 기관이나 공단, 연구기관, 언론기관, 사회단체 등과의 연대와 제휴를 위하여 노력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본 학술발표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기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이번 학술발표회의 취지에 동참하여 흔쾌하게 공동개최의 의사를 밝혀주신 한국 초등도덕교육학회 조강모 회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학술대회의 기조 발제를 맡아 주신 한국 공법학회 제18대 회장이자 현 고문이신 김운용 교수님과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순서를 맡아주신 여러 발제자 및 토론자, 사회자 선생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위와 같은 내용의 프로젝트를 발주함으로써 본 학술발표회를 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매번 학회의 개최 장소를 제공하고 지원해주신 서울교육대학교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학술대회 준비에 시간과 정성을 다 해주고 있는 서울교대 법교육 연구소 연구원들과 두 학회의 임원진 및 사무국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24일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회장 허종렬

인사 말씀

우리나라는 세계 12위 정도의 교역규모를 가진 경제 대국으로서 이에 걸맞는 준법 의식, 도덕의식의 선진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절실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차제에 한국 초등도덕교육학회와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가 '법치주의와 학교 법 교육의 과제' 라는 주제를 걸고 공동학술발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일 것입니다.

한국 초등도덕교육학회의 관점에서 볼 때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어야 할 뿐 아니라 도덕교육의 핵심 주제들 중 하나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공동학술발표회를 제안하여 주신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의 허종렬 회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초등도덕교육학회는 1995년 11월에 전국의 11개 교육대학의 윤리교육과 교수진들과 초등 도덕과교육을 전공하는 교육대학원 학생들, 도덕교육에 관심을 가진 초등학교 현장의 교원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되었습니다.

본 학회는 한국 초등 도덕교육의 본산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자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 하계학술대회에서도 '초등도덕 개정교과서의 내용과 교실 수업의 방향' 이라는 주제 하에 16편의 논문 발표와 토론을 하였고 2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본 학회의 논문집은 현재까지 30집이 간행되었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 로서 '등재지' 로의 승격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번 학술발표회에서 본 학회의 원로 학자 두 분께서 초등학교 법 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하시고, 또한 본 학회 소속의 교수님 한 분과 초등학교 현장의 선생님 한 분이 토론을 담당하시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제2부 주제의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또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이번 학술발표회가 열릴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주셨음에 대하여 특별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9년 10월 24일

한국 초등도덕교육학회 회장 조 강 모

기초 발제

- 법치주의와 헌법 교육의 필요성

[기조 발제]

법치주의와 헌법 교육의 중요성

김 운 용(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I.

우리의 성문헌법은 전문과 함께 본문 130개 조와 부칙 6개 조로 된 비교적 작은 규모의 법이다. 따라서 민법이나 상법, 형법 등 방대한 법률에 비하면 단출한 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나 비중으로 보면 결코 간단하게 보아 넘길 수 있는 법은 아니라 하겠다. 이 법이 추구하고 있는 바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것인가를 고려할 때 그리고 그 복잡하고 추상적인 의미내용과 논리구조를 놓고 볼 때 오히려 크고도 무거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이다. 크고도 무거운 법인만큼 헌법은 다른 법률들과는 차별화되는 몇 가지 특수성을 지닌다.

1) 그 중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헌법이 한 나라의 국정 운영 및 민의 사회생활과 직결된 기본법이라는 점이다. 이런 내용의 기본법이다 보니 그 안에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근본규범들을 담고 있게 마련이다.

2) 그리고 법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간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헌법은 그런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특히 정치적인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다.

3) 헌법은 다른 법률들과는 달리 고도의 정치적 이념성을 바탕에 깔고 있어서 이 이념의 렌즈를 통하지 않고서는 한 헌법의 진정한 의미내용을 파악해 낼 도리가 없게 된다.

4) 헌법은 최고의 지위에 있는 법규범으로서 다른 모든 법률의 최종적 타당근거가 된다.

이런 특수성을 지닌 헌법이 궁극적인 가치로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고, 헌법이 담고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 제도와 권한은 항상 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에 비추어서 이해되고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적 당위이다.

2 2009 추계 법과 인권교육 공동 학술 발표회(기조발제)

II.

우리는 대략적으로 헌법을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을 열거해 놓은 부분 즉 기본권 부분을 들 수 있고, 다음으로 국가기구를 어떻게 구성하며 그렇게 해서 구성된 개개 기관에는 어떤 권한을 어느 정도로 부여하며 이들 권한의 행사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견제할 것인가를 내용으로 하는 통치구조에 관한 부분을 들 수 있다.

기본권 부분을 지배하는 근본 규범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한 존재이고 어떠한 구실로도 이는 훼손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간 존엄성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헌법의 기본권 장전은 네 가지 원칙을 명시해 놓고 있다.

첫째 인간은 생래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인 만큼 이러한 자유는 기본적 인권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모든 개인은 인간 그 자체로서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이다. 바로 이러한 평등의 관념으로부터 개인적 인권으로서의 평등권과 함께 사회생활의 준칙으로서의 평등의 원칙이 도출된다는 것

셋째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인간 존엄성의 근본규범은 허구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차원에서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넷째 자유, 평등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 등은 다양한 기본적 인권으로 구체화 되어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기본권도 사회 생활상의 제약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즉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것 못지 않게 사회 생활상의 책임과 의무도 기꺼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부인한다면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생활 자체가 존립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우리 헌법은 37조 2항에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자유와 권리가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III.

우리 헌법의 국가권력 구조에 관한 조항을 지배하는 근본규범도 인간 존엄성의 존중이다. 이를테면 국가기관의 구성이나 권한행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헌법조항을 해석한다고 할 때 항상 인간존엄성의 존중이라는 근본규범에 비추어서 이를 해석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인간 존엄성의 존중이라는 근본규범의 바탕 위에서 우리 헌법

은 국가권력 구조와 관련하여 세 개의 원칙을 전제하고 있다.

첫째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는 주권재민의 원칙이다

둘째 국가의 모든 의사결정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절차도 민주적이어야 하지만 내용적으로도 의사결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셋째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은 요컨대 자기의사에 의한 자기지배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대표의 원리이다. 하나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인 것으로 공인받기 위해서는 그 결정이 필히 국민의 대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IV.

위에서 근본규범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하여 자유의 원칙, 평등의 원칙, 인간다운 생활의 원칙, 자유와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의 원칙, 그리고 주권재민의 원칙, 의사결정의 민주성 원칙, 국민의 대표에 의한 의사결정의 원칙 등을 우리 헌법에 담겨져 있는 핵심과 골간으로 열거 하였다. 이것은 지극히 개략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논자 나름의 주관적인 생각에 더 잡은 것이다. 따라서 헌법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이러한 내용은 얼마든지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열거한 여러 원칙들은 하나 같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이어서 시민생활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거듭 마음속에 되 새겨야 할 준칙이라 하겠다. 이것은 단순히 국가의 헌법규범에만 국한된 것이라기보다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그대로 강조될 수 있는 것들이다. 예컨대 국가를 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헌법과는 별도로 같은 규범논지를 내세워 다른 사람으로 부터도 나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에 상응하여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닐 수 없다. 헌법은 국법체계의 정점에 위치해 있으면서 국법질서 전반을 지배하는 상위법 규범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가장 기초적인 근본규범을 담고 있어서 시민들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의 기본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역경에 처하여 극한적인 상황에 내몰린 때뿐만 아니라 비록 극한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가치관의 혼돈이 심각하거나 사회분열과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이어지는 경우 거의 당연한 처방처럼 그 사회의 근본규범이나 기본적인 가치관으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이

4 2009 추계 법과 인권교육 공동 학술 발표회(기조발제)

이러한 근본적인 것, 기본적인 것, 기초가 되는 것 들을 마음속에 항상 담고 있을 때 비로소 그 사회의 위기대처 능력이 확실한 담보를 갖게 되는 것이다. 시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시민의식으로 무장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부과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V.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해 나갈 것인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확실한 것으로는 교육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교육이라는 것이 대단히 느리고, 어렵고, 우회하는 길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확실하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이에 견줄만한 것이 없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당면한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교육 이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정도이다.

교육을 통하여 사회의 근본규범, 기본적인 원칙, 기초적인 질서관념을 어릴 때부터 사회구성원들의 마음속에 심어 주고, 이렇게 하기를 거듭 거듭 반복해서 꾸준히 하는 경우 그 때 비로소 서서히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초등교육과정에서부터 헌법교육을 한다는 것은 곧 어린이에게 사회생활의 기본을 가르치는 것을 뜻한다. 더 말할 나위 없이 초등학교에서의 헌법교육은 단순히 헌법규범의 실무적 해석론을 위한 것일 수는 없다. 그와는 달리 헌법에 담겨져 있는 자유, 평등, 인간다운 생활의 의미 내용을 알고 이를 마음속에 익히도록 하는 데에 교육의 목표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헌법이 구현하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를 모든 시민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 미국의 교육철학자 존 듀이(John Dewey)가 민주주의를 가리켜 “생활의 양식”(way of life)이라고 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에 담겨 있는 모든 근본적인 것,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 들이 있는 그대로 우리의 “생활의 양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 떠맡은 과제이다. 이 일은 무엇보다 먼저 초등교육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주제 발표 I

-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 주요국의 초등학교 헌법 교육 동향 비교
- 초등학교 헌법교육 교재 개발의 방향

[주제발표 1]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허 종 열(서울교대)

- I. 연구의 계기와 연구 과정
 - II. 헌법교육의 의미, 필요성과 가능성
 - III. 헌법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 IV. 본 연구의 쟁점과 과제
- * 참고자료

I. 들어가며

연구의 계기는 필자가 책임자로 있는 서울교대 법교육연구소가 법무부로부터 지난 7월 “초등학교 헌법교육 개선방안 및 교재개발의 방향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받은 데에 있다. 말하자면 오늘 발표는 그 중간 보고에 해당된다. 학회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수정, 보완하고자 한다.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국가 체제의 법적 근간이고 국가 정치의 기반이 되는 헌법 교육 강화를 위한 기초 연구로써,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초등학교 헌법 교육의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적합한 교재 개발의 방향을 찾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6 2009 추계 법과 인권교육 공동 학술 발표회(주제발표1)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초등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외국의 헌법교육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초등학교에 적합한 헌법교육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한다. 위에서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서 초등학교 현장에 투입될 교재를 개발의 방향을 모색하며, 교사용 지도안을 작성하여 제시하고,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타당성을 분석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1) 문헌연구, (2) 헌법 교육 개발 연구진 회의 및 작업, (3) 집필진 회의 및 작업, (4) 검토진 회의, (5) 시범학교 및 실험 학급 운영, (6) 시범학급 담당 교사 회의, (7) 관련 학회에서의 공개 발표 및 토론회 개최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3. 그 동안의 연구 추진 경과

1) 연구 추진 일정

- 8월 : 헌법 내용 분석 및 범위 확정, 9월 : 국내외 헌법교육 동향 분석
- 10월 : 초등학교 헌법교육 교육내용 및 지도안 개발, 시범학교 운영
- 11월-12월 : 헌법연구 교재 개발 방향 설정 및 최종보고서 작성

2) 구체적인 연구 활동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연구진 협의회 : 9차례(격주 1회), 해외 헌법교육 동향 조사, 헌법 내용 분석 및 교육내용 확정과 분담, 지도안 개발, 지도안의 타당성을 높이기 검증하기 위한 설문 작성 및 사전 조사, 실험학교의 실제 운영(서울 소재 11개 학교) : 1인당 4차시. 10월 6일-16일

II. 헌법교육의 의미, 필요성과 가능성

1. 헌법교육의 의미

헌법교육은 넓게 볼 때, 당연히 법교육의 일부이다. 따라서 헌법교육 역시 법학, 특히 헌법학을 바탕으로 하여 헌법관계를 중심으로 한 당사자의 법적 분쟁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이해, 기능, 가치와 태도 및 비판 능력을 계발할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조직화된 학습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교육 역시 헌법전문가를 길러내는 법학교육의 일부인 것은 아니며, 민주시민교육의 한 방편으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법적 소양(Legal Literacy), 특히 헌법적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그 주된 목표로 한다(허종렬, 2009, 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7-14).

2 헌법교육과 구별해야 할 개념

1) 인권교육과의 구별

헌법교육은 특히 인권교육과 많은 부분 겹친다. 그것은 헌법이 바로 기본적 인권을 규정한 규범이기 때문이다. 헌법교육을 하면 그것은 동시에 인권교육을 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양자의 취지는 서로 다른 면이 있다. 헌법교육은 인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를 같이 다룬다. 국민들의 헌법에 대한 이해와 그 제도에의 참여를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교육은 인권 자체를 중시하며, 헌법상의 인권은 물론 그밖의 국내외적 인권규범 모두에 관심을 갖는다.

종래 우리나라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을 준별하여 양자가 목적으로 달리 한다고 보아왔다. 그러나 ‘법’ 또는 ‘인권’만의 교육보다는 ‘법과 인권’을 같이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헌법교육은 양자를 모두 포괄하는 점이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정치교육과의 구별

헌법교육은 흔히 정치교육의 일부로 취급되기도 한다. 헌법은 그 자체로서 특히 정치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교육은 기본적으로 정치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정치학의 내용은 정치권력, 정치과정, 정치제도 등이다. 정치교육도 규범교육과 가치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때로는 규범 특히 헌법을 다루기도 한다. 그러나 본질

8 2009 추계 법과 인권교육 공동 학술 발표회(주제발표1)

은 실증과학인 정치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헌법교육은 정치교육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실증과학인 정치학이 아니라 규범과학인 법학, 특히 헌법학에 터를 잡고 있다. 따라서 접근방법도 법학에서 강조하는 법률관계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한 방법에 입각해 있다(허종렬, 2009, 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8-9).

3) 본 연구에서의 현실적 문제 검토

첫째, 본 연구에서는 헌법을 초등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법교육 중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할 것인가가 현실적인 과제로 다가 왔다. 이 부분은 초등학교 법교육 전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는 우선 기존의 교육과정을 존중하는 선에서 헌법 분야만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한 것이므로 이것에 관한 근본적인 검토는 추후의 과제로 미루어둔다.

둘째, 헌법교육의 범주에 인권교육의 성과를 어느 정도로 반영할 것인가 하는 점이 과제이다. 지금까지의 국내 인권교육의 성과를 다 반영하자면 이는 매우 무리한 접근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헌법교육과 인권교육을 구별하여 인권교육 중에서는 헌법상의 인권을 다룬 것들만 반영하기로 하고 하였다. 따라서 국제인권법상의 내용을 다룬 인권교육의 성과는 본 연구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것이 헌법교육의 핵심이 인권교육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3. 헌법교육의 필요성

1) 법교육 일반에 인정되는 필요성

헌법교육도 법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법교육의 필요성 관점에서 헌법교육의 필요성이 자연히 도출된다. 따라서 헌법교육도 법치주의의 요청,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국가와 사회의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한 때 헌법 자체에 대해서 이를 폄하하는 듯한 정치적 상황이 야기된 점도 있으므로 헌법에 대한 의식의 개선 차원에서도 이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헌법교육에 특별히 인정되는 필요성

미국 워싱턴주의 법교육과정은 그 목적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면서 그 중에 첫 번째로 학생들의 헌법상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미국의 가치를 명료화하는 데 법원의 획기적 판결에 익숙하도록 한다는 점을 적시하였다(허종렬, 1992: 367).

Mcbee, Robin Haskeli(1994 : 3)은 법교육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네 가지를 거론하면서 그 중에 법률과 헌법의 지식을 넓히고 그것과의 개인적 관련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들고, 수업에서 Virginia Constitution과 같은 원자료들을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헌법교육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1) 인권보장적 관점

보호되는 권리와 자유는 그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 권리와 자유의 행사는 그것을 아는 지식에 의존한다(Jerrold R. Coombs, etc., 1990 : 78).

(2) 민주시민교육적 관점

민주시민교육적 관점에서 더더욱 헌법교육이 요청된다. 헌법은 그 자체가 민주시민이 규범이기 때문이다.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규정하고,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을 규정한 점이 이를 증거한다(June Tyler & David L.Manning, 1981 : 5).

요건대, 법교육 가운데에서도 특히 헌법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헌법이 표방하고 있는 입헌적 민주주의(constitutional democracy) 때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Jerrold R. Coombs(1990), etc.,78).

(3) 법치주의적 관점

법치주의와 민주시민교육적 관점은 일반 법교육에 비하여 헌법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하는 부분이다.

법치주의는 바로 헌법 자체를 이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헌법교육의 필요성이 강하게 도출된다(Charles J, White, 1975 : 30).

완전한 시민정신이란 자신의 행동을 지도하는 법적 원리를 알고 그것을 고려하며, 그러한 행동을 추구하는 의도와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국의 헌법을 공부하는 것은 이러한 완전한 시민정신을 획득하게 하는 데 근본적이다. 즉 완전한 시민정신은 자신의 법적인 의무를 인식하고 스스로 그것을 진중하게 받아들일 의무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Jerrold R. Coombs(1990), etc.,79 ; Jerrold R. Coombs(1990), etc.,78).

10 2009 추계 법과 인권교육 공동 학술 발표회(주제발표1)

4. 초등학교에서의 헌법교육의 가능성

미국의 Center for Civic Education(CCE)는 고등학교, 중학교에서만 아니라 초등학교 심지어는 유치원과정에서의 헌법교육 프로그램까지 개발하여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단체이다. 초등학교 1, 2학년 혹은 3, 4학년 프로그램을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온다(http://www.civiced.org/index.php?page=elementary_school).

The Preamble is made up of many words that might be hard to understand when you first read them. But if you study them, you will find they are not that difficult

미국 위스콘신주 법교육 과정도 중등단계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나아가 유치원 단계에서의 교육과정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권위’와 ‘권리’에 관해서는 전과정에서, ‘헌법적 기초’에 관해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헌법과 연방 및 주법간의 관계와 비교에 대해서는 5학년부터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허종렬, 1992 : 37).

미국의 각종 문헌들은 헌법이라고 하여 어렵게 생각하여 기피할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필자 역시 늘 같은 생각이다. 마치 브루너와 삐아제의 이론을 여기에서 다시 확인하는 느낌이다.

초등학교 대상의 헌법교육 사례들은 무수히 많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부록으로 실는다(부록 1 참조).

Ⅲ. 헌법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헌법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은 이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 개선방안 역시 같이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현황과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각 측면에서 동시에 언급하기로 한다.

1. 교육환경과 역사적 측면

학교 헌법교육의 현황을 보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헌법을 제대로 소개하지 않고 있다. 국가와 사회의 헌법교육적 기능도 약하다. 제한점이 있으나 국민적 관심이

약하다. 이런 날을 미국처럼 대대적인 헌법교육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언론의 역할도 부족하다. 다만 요즘 종종 헌법재판의 판례가 소개됨으로써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한때 헌법과피의 역사를 겪은 바 있다. 이승만 정부 하의 사사오입 개헌, 5.16, 삼선개헌, 유신헌법, 5.18 사태등이 그것들이다.

몇년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라 한다)에서 초·중·고등학교 사회과교과서(이하 ‘교과서’라 한다)를 모두 분석·검토하여 교육부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헌재는 교과서에서 민법이나 형법 등에 비하여 헌법을 소홀히 다루는 점, 헌법재판을 설명하면서 이를 일반 법원 조직의 일부로 혼동한 점, 헌법재판제도를 소개하면서 위헌법률심사제도를 빠뜨린 점,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도 성문헌법과 기본권 보장 문제를 간과한 점, 법교육을 한다면서 권리보다 의무 본위의 설명을 한 점, 준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소크라테스의 일화와 ‘악법도 법이다.’라는 어구에 의존한 점등을 지적하고 있다.

2. 교육내용 측면

1) 내용의 왜곡과 편중성 등

(1) 법치주의 교육의 왜곡과 미흡

위의 헌법재판소가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오용하여 법치주의를 왜곡한 것을 지적한 것처럼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이러한 일이 많았다.

그러나 건전한 법치주의 교육은 오히려 강화될 필요도 있다.

문헌에 의하면 앞으로의 법교육에는 네 가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시민생활에서 공공복리와 인권 상호간에 비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도 법교육의 중요한 과제이다(Mabel C. Mckinney-Browning, 1998 : 39).

(2) 인권교육의 일관성 결여

우리나라에서 인권교육은 논란의 한 가운데 있다.

정부의 성격에 따라 인권교육이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 또는 부정되기도 하였다. 과거 38년동안 우리는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살아왔으며 그 기간동안 인권교육은 사실상 부정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문민화 되고, 인권 또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인권교육은 강화되었다.

인권교육은 이 외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12 2009 추계 법과 인권교육 공동 학술 발표회(주제발표1)

특히 초등학교 인권교육은 내용적으로 매우 편중되어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보다 다양한 인권이 다루어져야 한다.

교육과정을 보면 사회과의 성격에서 표방한 인권의식의 제고 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그 목표 설정에서 보면 이점이 보이지 않고 용두사미가 되어 있다(같은 지적으로는 박인현, 1995 : 116 참조). 또한 내용 선정, 조직과 계열에서 6학년에서만 취급되는 것은 문제이다.

인권 관련 교사 연수가 절실하다. 교사용 지도자료 및 참고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인권의식과 헌법의식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이를 교육과정과 방법에 반영하여야 한다(허종렬 외 2002, 284-286).

인권교육이 특정교과에 치우쳐 이루어지고, 인지적인 영역에 머무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학교와 교실에 국한하여 적용되며, 교권과의 충돌을 의식하여 부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인권교육의 주체, 내용, 대상의 확대와 참여지향적 모형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설규주, 2005 : 44-52).

2) 교육과정의 타당성 미흡

사회과에서 다루고 있는 법교육 내용들이 6학년 2학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학년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박인현, 1995.: 117.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법교육 관련 내용의 역사적 개관과 문제점에 관해서는 허종렬 외, 2009, 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참조)

필자는 이번 기회에 헌법과 관련하여 과거 사회과 교육과정을 모두 검토하였다(부록 2 참조).

그 결과 모두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그 내용을 다루어 왔다. 다만 이미 지적하였듯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보다는 제한을 정당화하는 내용들이 소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향은 문민정부 이후 사라졌으며, 2007년의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오히려 헌법을 의식하지 않고서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달라졌다. 아래의 내용이 그것이다.

(6학년] -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민주 정치는 많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유지되고 발전된다. 민주적 삶의 과정에서 국민들은 여러 가지 법 규범과 그 운영 원리를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한다. 또한 다양한 정치 생활에 참여하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법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고, 주요 국가 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인식한다. 또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 및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자각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①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는 참여를 통해 만들어 가는 것임을 이해한다.

②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그 외의 다양한 법들이 우리 생활을 위해 필요함을 인식한다.

③ 국회, 행정부, 법원의 구조와 기능을 권력 분립의 원리와 연관지어 이해한다.

④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⑤ 공공 생활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를 자각하고 이를 준수하는 태도를 기른다.

⑥ 관용, 대화, 타협, 절차 준수 등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

3. 교재 개발 및 사용 측면

헌법교육과 관련된 교재 개발이 미흡하다. 이것은 비단 법교육과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다. 특히 부교재의 발행이 미흡하다.

4. 교육행사 측면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보다 실제 일상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다.

1년의 관련 국경일이나 절기를 이용하여 헌법 관련 교육을 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미국이 특히 그런 면에서 강하다. 우리나라에도는 그러한 기념일이 제법 된다.

제헌절, 광복절, 4.19, 4.20 5월 1일 법의 날, 7월 17일 제헌절, 12월 10일 세계인권기념일 등이 모두 그 취지를 살리면 헌법교육을 하기에 적합한 날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런 날들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많이 개발할 부분이다.

14 2009 추계 법과 인권교육 공동 학술 발표회(주제발표1)

5. 학습의 장 측면

헌법교육이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유관 기관이나 단체를 찾아 현장에서 직접 헌법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취약하다. 물론 각 기관들에서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두고 있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자들의 전문성이 떨어져 형식적인 견학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가 주최하고, 한국 법문화진흥센터가 주관하는 어린이 헌법캠프(2009.7.20-22)는 주목할 만하다. 올해 처음 개설하였는데, 대전의 솔로몬 Law Park에서 열려 현장감을 더해주었다. 내용은 나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권리 5가지, 우리는 헌법을 지키는 파워 헌법 맨, 나는 야 법쟁, 변호사님 질문 있어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 학습방법 측면

법교육이 주입식 교육에 치중하고, 사례교육에 소홀하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부분이다.(박인현, 1995 : 120).

미국이 경우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초등학교에서의 구체적 헌법교육 프로그램은 무수히 많다. 이것들은 모두 초등학교에서도 헌법교육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것이며, 실제로 그 프로그램들의 방법론을 살펴보면 실감이 나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Center for Civic Education이 제헌절을 맞이하여 헌법 전문을 공부하는 학습모형을 개발한 것을 소개한다. “We the People: The Citizen and the Constitution”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발췌한 것이다.¹⁾

(1) Grade K

"Orb & Effy Learn About Authority"

1) The program is endorsed by the Kentucky Supreme Court and has been in operation since 1993. Chief Justice Joseph E. Lambert and AOC Director Cicely Jaracz Lambert have been unwavering in their support of the Center for Civic Education's programs, evidenced by their willingness to commit AOC resources to a variety of education projects(<http://courts.ky.gov/lre/wtp.htm>).

(2) Grades 1 - 2

"Learning About Authority"

(3) Grades 3 - 4

"What Basic Ideas Are in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4) Grades 5 - 6

"What Basic Ideas About Government Are Included in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5) Upper Elementary Grades

a. "What Is a Republican Government?"

Student Lesson [Teacher's version]

b. "What Responsibilities Accompany Our Rights?"

Student Lesson [Teacher's version]

7. 교원 양성 및 연수 측면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또 주목하는 것은 교원양성과 연수과정에 헌법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1) 헌법 관련 교사 양성의 현주소

필자의 분석에 의하면 아직까지 초등교사의 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각 대학들에서 정식의 강좌에 헌법이 포함된 것을 찾기 어렵다.

법교육과 직접 관련 있는 과목을 개설한 대학은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교대가 유일하며, 9개 대학이 학부 1학년에 법학 또는 법률 여행등의 이름으로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나 법교육 과목 자체는 없다. 아예 대학 내에 법 관련 과목이 전무한 대학도 4개 대학이 있다. 대학원 과정에서도 법교육을 직접 개설한 대학 역시 한두 개에 불과하다. 나아가 헌법 과목을 개설한 학부는 전혀 없으며, 서울교대의 대학원에서 헌법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을 뿐이다(허종렬, 2009 : 24).

그러나 일본은 각 교육대학이 헌법을 필수로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점 우리에게 시사를 준다고 할 것이다.

16 2009 추계 법과 인권교육 공동 학술 발표회(주제발표1)

초등학교 교사 연수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이다. 법교육을 다루는 연수 기회 자체가 부족하여 아직까지 서울교대 법교육연구소와 대전 로파크에서 하는 것이 전부인데, 그마저도 아직 헌법까지는 수용을 못하고 있다. 앞으로 속히 심화과정이 개설되어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기대해본다

IV. 본 연구의 쟁점과 과제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짚어보았다. 본론에서 살펴본 대로 초등학교 헌법교육은 이를 이 관점에서만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헌법교육의 당위성에 비추어보면 이것이 초등학교 저학년 부터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6학년 2학기에 와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져 계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용의 선정에서도 헌법의 전반적인 분야를 골고루 다루지 못하고 있다. 방법 면에서도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기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흥미를 끄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교사들마저 이 분야 기본 지식이 부족하여 다루기를 꺼려하고 있다. 여기에 교재마저 교과서 자체가 지식과 개념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문제이며, 생생한 생활주변의 사례들을 통합 접근방법이 간과되고 있다. 헌법 교사의 양성과 연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헌법교육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검토해보고, 지도안을 개발하여 현재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연구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것은 국가와 범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투입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교원양성과 연수, 교과서의 개발에서 이러한 것들에 관여하는 책임자들이 헌법교육의 필요성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이것들이 제도적으로 잘 보장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학계에서 법교육 일반에 대해서 개선방안으로 지적한 것들도 헌법교육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박용조 교수는 법교육은 내용 면에서 학생들이 접근 가능한 것을 활용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방법 면에서 학생들의 행동을 기반으로 하며,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며, 학교교육과정 자체에서의 관련 내용 강화를 전제로 다른 교과와 통합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고 한다(박용조, 2009 : 20-21). 이대성 박사 역시 법교육지원법 하에서의 학교 법교육의 실천 과제를 검토하면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민간 중심의 법교육, 교사의 전문성에 기초한 법교육, 다수 학생 참여 중심의 법교육, 학교 현장 중심의 법교육, 법교육 유관 기관과의 지원체제 구축, 탐구 공동체 구축을 통한 법교육 연구 과제 수행을 제안하

고 있다(이대성, 2009 : 70-73).

끝으로 이러한 필자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박인현 교수는 법교육이 6학년에 집중 배치된 점에 대해서 필자와 같이 문제로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주로 헌법 위주의 것인 점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즉, 개인이 실질적으로 접하면서 부딪히는 실생활적인 법교육 내용이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추상적인 헌법적 개념이나 원리를 기초로 하는 개념보다는 법 교육상 요구되는 각종의 개념들을 폭넓게 접근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다(박인현, 1995 : 118).

또한 박성혁 교수 등은 다른 관점에서 초등학교 6학년 헌법 관련 내용과 중학교 2학년의 법 기초 관련 내용이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아 학습 가능성, 학습 결손, 학습내용 왜곡 등의 문제를 낳고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으로서 법규범의 필요성과 그 형태 및 종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법교육이 출발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법교육이 정치체제의 기능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헌법의 주요 기본권을 언급하는 것은 학습발달단계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학습단계상으로는 법 기초 내용을 다루고 있는 중학교 단계와 통치체제 및 기본권을 다루고 있는 초등학교의 학습내용이 오히려 서로 바뀌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박성혁 외, 2005, : 34).

필자의 견해로는 박인현 교수의 지적이나 박성혁 교수의 견해들은 앞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저학년부터 법교육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내용을 바꾸어서 하자는 견해는 곤란하다고 보며, 그 적용 가능성이 인정되는 이상 미국이 사례들에서 보는 것처럼 초등학교에서부터 헌법교육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 외에도 교재개발의 방향 등에 관해서도 오늘 토론회에서 서로 다른 견해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토론자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연구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가급적 수용하는 자세로 경청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 박상준 (2009), 사회과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박성혁 외(2005), 초중등 법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개발 연구, 법무부.
- 박용조(2009), 한국 학교 법교육의 전개양상, 사회과교육연구, 제16권 2호, 13-41.
- 박인현(1995), 초등학교 학생들의 법의식 교육 개선에 관한 소고. 한국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연구회, 사회과교육연구, 제7집, 89-126.
- 설규주(2005), 한국시민사회의 성장과 학교 인권교육의 과제, 사회과교육, 제44권 1호, 27-56.
- 이대성(2009), 법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학교법교육의 실천과제, 사회과교육연구, 제16권 3호, 63-75.
- 허종렬 외 (2008), 함께하는 법이야기, 법무부.
- 허종렬(2008). 필리핀 학교 인권교육의 동향 분석, 한국초등교육, 제18권 2호, 서울교육대학교초등교육연구원, 17-34.
- 허종렬(2009), 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교육대학교 법교육연구소등, 법무부, 7-25.
- ABA(1995), Essentials of Law-Related Education : A Guide for Practitioners & Policemaker.
- A K-12 Law Related Education Curriculum guide, Virginia commonwealth Univ., Richmond, Inst. for Law and citizenship Studies.
- Ardice Hartry, Kristie Porter(2004), We the People Curriculum: Results of Pilot Test-A report to the Center for Civic Education, MPR Associates, Inc.
- Arlene F. Gallagher, etc(1978)., the Methods Book-Srategies for Law-focused Education, Law in american society foundation, Chicago.
- Center for Civic Education(2003), We the People the citizen & the Constitution-Teacher's Edition(Calabasas,CA) : 5-13.
- Charles J, White,(1975), Law Related Education in America(Chicago : ABA/YEFC,
- Clair W. Keller, Denny L. Schillings(ed.)(1987), Teaching about the

- Constitution(NCSS Bulletin No. 80),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 Diana Owen(2004), Citizenship Identity and Civic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Georgetown University.
- James Anthony Whitson(1990), Constitution & Curriculum-Hermeneutical Semiotics of Cases and Constroversies in Educational, Law, and Social Science, The Palmer Press.
- John Patrick(2006), Human Rights in Civic Education, Conference on Democracy-Promo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Denver, Colorado.
- John J. Patrick(2007), The Constitution and Education for Citizenship in America, Indiana University.
- Jerrold R. Coombs(1990), etc., Ends in View -An Analysis of the Goals of Law-Related Education, Centre for the Study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University of British colombia & Centr for Education, Law & Society Simon Fraser University : 78.
- June Tyler & David L.Manning(1981), A Guide to Curriculum Development in Social Studies(The Connecticut State Board of Education.
- Mabel C. Mckinney-Browning(1998), "Educating for civic Participation : Law-Related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Wanda Cassidy & Ruth Yates, Let's Talk About Law in Elementary Schoo, Detsellig Enterprises Ltd.
- Mcbee, Robin Haskeli(1994), Living the law by Laearning the Law, ERIC.
- Reiner, Fran, etc.,(1986), The Bill of rights : A Law-related Curriculum for Grades 4-6 -Student Materials and Teacher's Guide.
- WSCSC(1979), Rescriptors for Law Related education, Wisconsin State Dept. of Public Instruction.
- Walter D. Talbot, etc.,(1980), Lesson Plans in Law-Related Education-Elementary, Utha State Office of Education.

http://www.civiced.org/index.php?page=elementary_school.

20 2009 추계 법과 인권교육 공동 학술 발표회(주제발표1)

<http://courts.ky.gov/lre/wtp.htm>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http://www.ccourt.go.kr/>

<http://kids.ccourt.go.kr/>

http://www.teach-nology.com/worksheets/soc_studies/constit/

<http://www.lawedu.go.kr>

<http://www.law.go.kr/LSW/Main.html>

<http://kr.blog.yahoo.com/lodemtrees/42195>

http://www.civiced.org/index.php?page=elementary_school

<http://civics.ky.gov/educators/students/constitution.htm>

http://constitutioncenter.org/ncc_progs_Elementary_School.aspx

<http://publiced.abanet.org/lre/organization.jspa?pid=42>

<http://www.crf-usa.org/war-in-iraq/war-in-iraq.htm>

〈 부록 1 〉 미국 초등학교 헌법교육 프로그램의 사례

(1) Center for Civic Education(CCE)
Lessons for Constitution Day and Citizenship Day
Elementary School
<http://www.civiced.org/byrd2006/>

(2) Civics Mission of Schools
Living Together Under The Law
Elementary School
<http://www.civicmissionofschools.org/resources/Prax/Level%203%20Pages/livingtogether.html>

(3) EDSITEment-The Best of the Humanities on the Web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How Do You Make a More Perfect Union?
Elementary School
http://edsitement.neh.gov/view_lesson_plan.asp?id=233

(4) Education World
Scavenger Hunt: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Elementary School
http://www.educationworld.com/a_lesson/hunt/hunt046.shtml

(5) National Directory of Law-Related Programs: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Project

- a. Program name : Liberty Day & Constitution Day(1988)
- b. Program name (Constitutional Rights Foundation Chicago)(1974)
- c. Program name Project R.E.A.L(Foundation for Relevant Education About the Law)(2005).
- d. Program name LYC Program(Law, Youth & Citizenship Program)(1976)
- e. Program name American Heritage Education Foundation((American

22 2009 추계 법과 인권교육 공동 학술 발표회(주제발표1)

Heritage Education Foundation, Inc. (AHEF)(1995)

f. Program name Legal Studies Academy(First Colonial HS)(2002)

(6) Ben's Guide to U.S. Government For Kids

Ben's Guide provides information and activities specifically tailored for educators, parents, and students in K-12. These resources can help teach about our government and how it works.

(7) I Signed the Constitution Program

Grades K-2 , 3-5 , 6-8 , 9-12

Approach(es) •Instruction in History, Government, Law or Democracy

(8) CRF

a. The Constitution & the Bill of Rights: An Introduction

Grades 4-12 the story of the development of the Constitution and Bill of Rights.

each of the 10 original amendments of the Bill of Rights as well as the later Civil War and 19th amendments

b. The Constitution & Bill of Rights: Due Process

a graphic version of CRF's "A Visitor From Outer Space" lesson

Grades 4-12

< 부록 2 > 사회과 교육과정상의 헌법교육 관련 내용 분석

교육과정	1	2	3	4	5	6
1차 교과과정, 사회생활과 (단기 4288)			책임과 공역	자유와 협동		국민의 본분(권리, 의무)
2차 교육과정, 사회 1963	교 통 규칙				근로와 강제노동과의 차이점	민주주의와 정치(삼권분립), 우리의 할 일(국민의 본분에 대한 이해와 그것의 올바른 행사)
3차 교육과정, 사회, 1973						민주대한의 발달 (4.19의거와 5.16 혁명), 우리나라 민주 정치(10월유신과 민주헌법, 국민의 권리와 의무, 우리나라의 통치기구), 민주적인 사회생활(법과 질서, 공익우선, 국민으로서의 책임.)
4차 교육과정, 저학년은 도덕과의 통합 운영, 사회, 1981	학 교 생활 규칙	공 동 생활 규칙	고장생활에서의 규칙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의 자유	사 회 규범 준 법 정신	국가와 국민생활(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복리증진 국민의 권리와 의무, 법의 의한 통치와 준법정신	우리나라의 헌법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우리나라 헌법의 특징, 국민의 권리, 국민의 의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우리나라의 통치기구)
5차 교육과정, 사회, 바른생활 1987			고장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범	사 회 생활 에서 지켜야 할 일	4차와 완전 동일함	우리나라 헌법의 특징 국민의 권리와 의무 우리나라의 통치기구
6차 교육과정, 사회, 슬기로운생활			공동생활을 위한 의사결정, 경쟁과 갈등, 협력	시도 공동 생활을 위한 규범 준수와 역할 수행	의사결정과 정치참여 법의 제정과 준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헌법상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 국민의 대표와 주민의 뜻 나라 일을 맡은 기관들 (삼권 분립, 국회, 대통령과 정부, 기본권을 수호하는 법원

24 2009 추계 법과 인권교육 공동 학술 발표회(주제발표1)

<p>7차 교육과정, 사회, 슬기로운 생활, 1997</p>				<p>주 민 자치(선거)와 지역 문제의 해결</p>	<p>민주정치의 기본원리 (선거, 유권자, 국회, 대통령, 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 신문에 나타난 판례와 법원이 하는 일, 국민의 기본권 보장) 민주시민의 권리와 준법정신(인권이 침해된 사례와 인권의 중요성, 국민의 기본권의 내용, 국방의무의 중요성, 국민의 기본의무)</p>
<p>2007 교육과정, 사회, 슬기로운 생활, 2007</p>				<p>주 민 자치</p>	<p>우리나라 민주정치로 위의 7차와 비슷함.</p>

[주제발표 2]

주요국의 초등학교 헌법교육 동향 비교

이 지 혜(서울 대림초)

I. 서론 II. 주요국의 초등학교 헌법교육 동향 III. 결론 * 참고문헌

I. 서론

헌법에 대한 인식이 법체계 전반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라고 할 때, 초등학교부터 헌법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나 헌법이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규범이며 정치생활의 가치규범으로서 정치와 사회질서에 지침을 제공한다(헌재결,1989.9.8,88헌가6)고 볼 때 헌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태도를 초등학교 시절부터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헌법교육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초등학교 6년 과정 중 유일하게 6학년 사회과에서 헌법 관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만 헌법의 필요성, 역사, 목적, 근본 이념과 정신에 대한 이해 없이 국회, 법원, 행정부와 같은 국가 구조론과 국민의 기본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의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 구성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생략한 채 곧바로 헌법 내용 자체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다 보니 학생들이 헌법에 대하여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게 되고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또한 학습 내용이 지식적 측면에만 치우쳐져 있어 학생들이 우리 헌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26 2009 추계 법과 인권교육 공동 학술 발표회(주제발표2)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평화 통일, 국제 평화 등과 같은 근본 가치에 대해 배울 기회가 없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요 각국의 초등학교 헌법교육²⁾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헌법교육에 영향을 끼친 일본, 미국과 더불어 시민교육 차원에서 헌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프랑스,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헌법교육을 명시한 필리핀 사례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만 보다 많은 나라의 사례를 분석하지 못하고, 각 나라에서도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지 못한 것은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II. 주요국의 초등학교 헌법교육 동향

1. 일본

1) 교육과정

일본의 헌법교육은 주권자 중심의 국민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생활 속에서 겪는 갈등 사례 등을 활용하여 체험형 헌법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의 초·중·고등학교 사회과 헌법교육과정의 강조점은 다음과 같다(최미진자, 2002, p.38).

① ‘국민주권’ 이론과 관련하여 국민의 한 사람까지 정치의 주체로서 인식을 깊게 하며 그로부터 실천의욕을 높이고 학교 헌법교육의 임무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주권자로서 국민의 의사는 국민의 대표자를 통해 의회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② 기본적 인권은 법의 지배하에 보호될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

일본의 헌법교육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주권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여 민주적 성장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인권의 근본정신을 이해하고 기본권에 관한 인식과 헌법에서 기본권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알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 헌법교육의 범위에는 헌법의 근본 사상이 되는 포괄적 인권교육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인권교육 중에서 구체적으로 ‘헌법’이 명시된 것만 다루고자 한다.

2) 법무성

일본 법무성은 법교육연구회(法教育研究会)³⁾와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①규칙 만들기 ②사법과 소비자 보호 ③헌법의 의의 ④사법 분야에 관한 교재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법무부, 2005, p.174). 이 중 ‘헌법의 의의’를 통하여 국민주권, 입헌주의의 기본 개념, 기본적 인권의 규정, 통치기준 등을 다루고 있다⁴⁾.

<표 1> 헌법의 의의(憲法の意義)

학습 목표	
지식	민주주의와 입헌주의라고 하는 현대 민주정치의 기본개념을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예를 기초로 생각하고, 기본적 인권의 존중과 정치구조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헌법의 의의를 이해한다.
기능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고,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능력을 기른다.
가치·태도	일본국헌법의 기본적 이념이나 정치 구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를 의욕적으로 추진한다.
차시	구성
1차시	·국가의 정치 형태는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2차시	·모두가 결정해야 하는 것, 모두가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
3차시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의 의의’는 헌법을 학생들의 생활과 연관시키면서, 민주주의, 인권, 권력의 문제와 결부하여 스스로를 주권자라고 자각하는 가운데 헌법의 의의를 인식시키고자 한다. 3차시의 학습은 1, 2차시 학습 내용과 연관시켜 헌법의 의의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고 있다. 입법권을 ‘결정해서 좋은 것에 대해 누군가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행정권을 ‘결정한 것을, 누가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 사법권을 ‘결정해서 좋은 것과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과의 구별이 지켜지고 있는가, 결정되어진 것이 적절히 실행되어져 있는가, 누가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인가’와 같이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서술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3) 일본의 법교육 연구회는 2003년 설립되었으며, 학교교육과정에서 법교육 학습 기회 신장을 위한 여러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4년 해산 후에는 법교육 협의회 산하의 ‘교재개정검토위원회’로 발전하였다.

4) 法教育推進協議會(第6回)議事概要의 실천목록 사례에 쓰쿠바대학 교육학부 부속초등학교에서의 실천사례가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2. 미국

1) 코네티컷 주(州)

미국의 경우 주(州) 단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코네티컷 주⁵⁾(州)를 일례로 살펴보면 사회과목 표준(Social Studies Framework)에서 ‘미국 헌법과 정부: 미국의 헌법, 미국 정치제도, 법의 지배,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개인, 주, 국가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배운다.’라고 헌법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http://www.sde.ct.gov>).

<표 2> 미국 헌법과 정부(US Constitution and Government)

학년	내용
K-2	·법에 따른 개인의 권리와 책임에 대하여 설명한다.
3-4	·권리장전을 포함하여 헌법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중요한 문서로 인식한다.
5-6	·주(州), 국가의 입법부의 책임 인식한다. ·지역, 주(州), 국가의 행정부 수반의 책임에 대하여 인식한다.

코네티컷 주(州)의 경우 헌법교육을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인식을 주요 학습 목표로 설정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헌법적 내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고 분석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설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헌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시민교육센터

미국의 경우 사회단체를 통한 법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시민교육센터(Center for Civic Education)는 ‘헌법과 권리장전에 관한 국가적 200년간의 경쟁’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초등학생의 헌법교육을 위한 ‘우리 국민·시민과 헌법’ 교재를 개발⁶⁾하여 일선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다.

5) 코네티컷 주(州) 경우 비영리 시민교육 센터인 ‘Connecticut Consortium for Law & Citizenship Education(CCLCE)와 함께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6) 이 밖에도 ‘민주주의의 기초’, ‘시민되기 계획’, ‘참여 실행하기’ 등과 같은 다양한 시민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있다.

<표 3> 우리 국민·시민과 헌법(We the People·The Citizen & The Constitution)

단원	학습 주제
1단원	정부설립자들은 정부에 대해 어떤 기본적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주제 1	1770년대의 미국인들의 삶은 어떤 방식이었는가?
주제 2	왜 정부설립자들은 국민들이 정부를 필요로 한다고 믿었는가?
주제 3	공화 정부는 무엇인가?
주제 4	입헌 정부는 무엇인가?
주제 5	설립자들이 사용한 독립선언의 이념은 무엇인가?
주제 6	첫 번째 주 정부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2단원	우리 헌법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주제 7	첫 번째 국가적 정부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주제 8	필라델피아 회의는 어떻게 조직되었는가?
주제 9	의회에서 각 주(州)의 대표는 몇 명인가?
주제 10	초기 설립자들은 노예제에 대해 어떻게 하였는가?
3단원	헌법은 우리 정부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주제 11	헌법 전문에 있는 정부에 대한 기본 이념은 무엇인가?
주제 12	헌법은 정부 권력을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가?
주제 13	입법부는 무엇인가?
주제 14	행정부는 무엇인가?
주제 15	사법부는 무엇인가?
주제 16	헌법은 어떻게 연방 정부 체도를 만들었는가?
4단원	헌법은 우리의 기본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가?
주제 17	헌법은 어떻게 표현의 자유권을 보장하는가?
주제 18	헌법은 어떻게 종교의 자유권을 보장하는가?
주제 19	헌법은 어떻게 법의 평등한 보호를 보장하는가?
주제 20	법은 어떻게 정당한 법의 절차 보장하는가?
주제 21	헌법은 어떻게 선거권을 보장하는가?

이 교재의 경우 헌법과 관련된 내용을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역사, 정부 조직, 기본 권리 등으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헌법의 형성과정과 기본 이념이 선행된 후 통치구조와 권리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헌법의 체계와 근본정신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학습 활동과 읽을거리, 매 차시마다 관련된 토의 주제가 제시된 것이 특징이다.

3. 프랑스

1) 시민교육

프랑스는 1989년 ‘시민이 시민권을 스스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의무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프랑스의 시민교육은 ‘역사·지리·시민교육’이라는 통합교과에 포함되어 있다(김원태 외, 2006, p.43, p.409). 특이할 점은 법에 대한 개념이 교과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의 의미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에 교육의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4,5학년 시민교육 과정은 총 15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헌법교육과 연관이 있는 단원은 다음과 같다.

<표 4> 시민교육(Education civique cycle3)

단원	내용
10. 공화국의 의원들	·프랑스의 투표권
11. 공화국의 자유	·언론 자유를 향한 행진
12. 프랑스에서 정의	·행동하는 정의
13. 공공서비스: 국가교육	·세계의 교육과 교육권
15. 사회 보장과 국가연대	·배려에서 상환으로

10단원에서는 5공화국 헌법(1958) 3조⁷⁾에 대한 학습이다. 헌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것과 헌법에 제시된 투표의 원칙과 투표권자의 권리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학습한다. 11단원에서는 헌법 전문 2조⁸⁾에 제시된 인권에 대한 학습과 5공화국 헌법(1958)에서 제시된 자유, 평등, 박애의 이념에 대하여 학습한다. 헌법에서 인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함으로써 헌법을 통한 인권 보호와 실현에 대하여 알아본다. 12단원에서는 직접적으로 헌법에 대하여 열거하지 않으나 프랑스 인권선언과 법원의 역할과 의무를 연계하여 학습한다. 13단원에서는 헌법 전문⁹⁾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의 교육에 대한 의무에 대하여 학습한다. 교육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을 통

7) 국가의 주권은 대표와 투표권으로 그를 실행하는 국민에게 있다.

8)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선언에 정의되었던 대로 인권에 대한 애정을 엄숙히 선언한다.

9) 국가는 아동과 성인의 교육, 직업교육과 문화에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하여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한다¹⁰⁾. 15년 원은 헌법 전문¹¹⁾에 제시된 사회보장권에 관한 것이다. 사회보장제도를 설립하여 헌법에 제시된 사회보장권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학습을 통해 확인한다.

이처럼 프랑스 헌법교육은 시민교육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인권과 결부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국가 기본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가 인권의 기본 정신이고 이것이 헌법에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4. 필리핀

1) 인권교육 사례집

필리핀은 헌법 제14장 제3조 제1항¹²⁾에서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교육부와 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는 ‘초등·중등 단계의 인권교육 사례집’중 초등과 관련된 사례집 (Human Rights Education Teaching Example for Elementary Education)을 통해 필리핀의 헌법교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허중렬, 2008, p.24).

<표 5> 초등학교 인권교육 사례집

(Human Rights Education Teaching Example for Elementary Education)

학년	학습주제	학습 내용	관련 과목	필리핀 헌법
3 학 년	지구를 아껴주세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 관한 권리	과학과 보건	헌법 2조 2항
	비가 가버렸어요	올바른 정보에 관한 권리	과학과 보건	헌법 2조 24항
	난 특별해요	생존 및 발달에 관한 권리	영어	헌법 2조 12항

10) 교과서에 프랑스의 교육 환경과 다른 나라 교육환경을 비교하기 위하여 야외에서 공부하는 아프리카 학생들, 거리에서 노숙하는 상파울로 학생들, 풍요로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미국 학생들, 질서를 강조하는 일본 학생들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진은 학생들에게 자유와 평등, 박애의 정신 보다는 자칫하면 다른 나라에 대한 선입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11) 국가는 모든 사람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린이, 어머니와 나이 든 노동자에게 건강의 보호, 휴식과 여가를 보장한다.

12) ARTICLE XIV Section 3. (1) All educational institutions shall include the study of the Constitution as part of the curricula.

32 2009 추계 법과 인권교육 공동 학술 발표회(주제발표2)

4 학 년	3,2,1,0... 권리들이 다 어디 갔나요?	생존 및 발달에 관한 권리	수학	헌법 2조 12항
	건강이 재산이에요	건강에 관한 권리	영어읽기	헌법 2조 15항
	마음을 바꿔보세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 관한 권리	과학과 보건	헌법 2조 2항
	계속 말하세요. 그러나...	표현의 자유	영어읽기, 타갈로그어	헌법 3조 4항
5 학 년	공존공생(共存共生)	생존에 필요한 최소 수 준을 유지할 권리	과학과 보건	헌법 2조 5항
6 학 년	관계있는 사람들	표현의 자유, 불법고용 으로부터의 보호	타갈로그어	헌법 3조 5항
	다르지만 같아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보호	타갈로그어	헌법 2조 14항

필리핀은 과학, 보건, 수학, 영어, 도덕, 타갈로그어 등 전 교과에 걸쳐 헌법교육이 실시되고 있다¹³⁾. 이는 헌법교육을 모든 교육과정에서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헌법의 추상적 개념과 복잡한 규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 주제와 학습 내용을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추어 다양화하였다. 각각의 주제와 관련된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학습의 근거 규범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아동에 대한 권리 내용이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이것이 헌법상에서 구현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III.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헌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정 7차 교육과정에 들어와서야 헌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

13) 필리핀 초등학교 인권교육 사례집은 사회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학습 영역에서의 인권의 통합적 적용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과는 관련 과목 분석에서 생략하였다.

하여 이것이 명문화¹⁴⁾되었지만 이미 다른 국가에서는 헌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법무성과 법교육 연구회가 공동으로 법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이 중 헌법을 독자적인 주제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코네티컷 주(州)의 경우 사회과를 통해 유치원에서부터 12학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헌법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다. 또한 시민교육센터에서 헌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헌법 관련 교재와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하였으며, 통합교과를 통해 헌법의 의미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인권과 헌법을 연결시킨 학습이 이루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실생활과 연관된 학습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필리핀의 경우 헌법에서 모든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권규약과 헌법조항을 연관시켜 헌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헌법교육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시도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우리나라 헌법교육의 방향은 지식적인 사실 전달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의미와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실생활과 연관된 생활 속의 헌법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헌법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이를 통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근본 가치를 내면화 할 수 있을 것이다.

14) 개정 7차 개정교육과정 초등학교 사회과를 살펴보면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그 외의 다양한 법들이 우리 생활을 위해 필요함을 인식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p.359).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8). 초등학교 교사용 사회과 지도서 6-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III.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김원태 외(2006). 주요 외국 학교 시민교육 내용 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박성혁(2005). 초·중등 법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개발연구. 법무부. 법무부
(2005). 미국·일본 법교육 현황 조사 자료집. 법무부.
- 최강범(2000). '법과 사회과목 학습목표 상세화', 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미진자(2002). '고등학교 법교육이 민주시민 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
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허종렬 (2008). '필리핀 학교 인권교육의 동향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 연
구원
- 法教育推進協議會 (第6回) 議事概要.(2006). 江口勇治 外
- 江口勇治(2007). 곽한영 외(역). 세계의 법교육 I. 한국학술정보(주)
- Center for Civic Education(2003). We the People·The Citizen &
TheConstitution.
- Commission on Human Rights of the Philippines & Department of
Education(2003). Human Rights Education Teaching Example for
Elementary Education.
- Constitution of the Philippines(1987)
- Maurice Duverger(2003). 문광삼 역. 프랑스 헌법과 정치사상. 해성.
- www.cclce.org
- www.deped.gov.ph
- www.sde.ct.gov

[주제발표 3]

초등학생을 위한 헌법 교육 교재 개발의 방향

권혜정(서울 상원초)

- I. 서론
 - II. 헌법 교재 개발의 이론적 배경
 - III. 초등학생을 위한 헌법 교재의 개발 방향
 - IV. 초등학생을 위한 헌법 교재 개발의 구체화
 - V. 결론
- * 참고문헌

I. 서론

법교육은 인권교육의 차원에서 널리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법무부진흥팀에서는 초등학생들의 법의식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헌법을 통한 법의식 변화를 파악하여 법치주의 실현 및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헌법은 법체계 전반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이기 때문이다. 발제자 역시 법무부의 ‘초등학교 헌법교육 개선 방안 및 교재 개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법교육의 토대가 되는 헌법교육(Constitutional Education)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초등학교 헌법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의 방향에 관해 연구진들을 대표하여 같이 논의해온 것을 정리해서 발표하고자 한다.

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것임에도 교육 현장에서는 헌법을 직접 가르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더구나 초등학생들에게 헌법교육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교재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거의 없었다. 이런 이유로 교재

36 2009 추계 법과 인권교육 공동 학술 발표회(주제발표3)

개발의 초점을 교사에게 맞추었다. 교육은 교수자의 교육 방식이나 앎의 깊이에 따라 그 내용 수준이 현저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을 초등학생들이 잘 배우고, 현장 교사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기 위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생들도 헌법에서 인간에게 부여된 기본 권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도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삽입해야 한다. 셋째, 현장 교사들이 쉽게 가르칠 수 있는 헌법 교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발제자는 현장 교사들이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수·학습 과정안 및 참고자료, 학습지 등에 대한 교재 개발을 연구하였다. 즉, 헌법교육 연구진들과 함께 연구했던 경험과 실험학교 운영을 통하여 초등학생들에게 헌법교육을 잘 할 수 있는 방향을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II. 헌법 교재 개발의 이론적 배경

성낙인(2008: 134)은 헌법교육이 법과대학의 교과목으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와 국민들이 헌법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초, 중, 고 모든 학생들을 상대로 법교육이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헌법교육이 교육 현장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의 덕목을 가르치는 원리이다. 헌법에서 말하는 기본권(자유권, 평등권 등)은 바로 민주시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김대환·박훈(2009: 73)은 건전한 시민을 헌법교육의 대상으로 그들이 헌법의 중요성을 통감하도록 하기 위해 헌법에 관한 기본 원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헌법교육의 방향은 특정 헌법이론이나 헌법관에 따른 사고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문명세계의 보편적인 헌법적 논의의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성낙인, 2008: 136). 즉, 교재 개발 역시 헌법의 기본 원리에 충실하되 헌법의 원래 의미가 특정 가치관에 치우치지 않도록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 수준을 고려한 교재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교육 교재를 개발하기에 앞서 헌법교육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에 대해 김현철(2009: 93-99)은 크게 두 가지로 헌법교육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첫째는 ‘법교육으로서의 헌법교육’이고, 둘째로는 ‘가치교육으로서의 헌법교육’이다.

먼저 ‘법교육으로서의 헌법교육’은 미국이나 독일처럼 그 사회의 시민들이 민주적 헌정국가의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전제 하에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교육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치적인 이유로 혼란스러웠던 우리의 법의식을 성찰할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의 탄생이 근대법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가르치는 교육이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원리를 가르치되 딱딱한 설명식이 아닌 아이들의 흥미를 고려할 교수학습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두 번째 ‘가치교육으로서의 헌법교육’을 살펴보자. 가치교육은 지식 위주의 교육이 아니다. 한 인간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이다. 즉, 헌법적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역사적 의미의 헌법, 입헌주의에 대한 교육, 공동체 삶에 대한 성찰’이다. 우리나라에서 ‘헌법의 역사’란 정치적으로 탄생했고 본질상 역동적이다. 첫 시작은 미약했으나 앞으로 우리나라의 헌법의 역사가 길 것이기 때문에 그 함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입헌주의에 대한 교육’은 민주정치에 대한 방식이다. 대표제와 결합하여 다수의 결정이 전체를 대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수의 결정뿐만 아니라 소수의 의견도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것이다. ‘공동체의 삶’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이라는 개인 시각의 한계를 넘어서 전체의 이익이라는 공동체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현철(2009: 93-99)은 이처럼 가치교육으로서의 헌법교육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발제자는 위의 내용에 더하여 ‘인권교육으로서의 헌법교육’을 세 번째 헌법교육의 특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인권¹⁾교육이란 헌법에서 말하는 기본적 인권을 가르치는 것이며 기본적 인권에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참정권, 청구권, 자유권, 평등권 등이 있다(서채언, 2007: 28). 따라서 ‘인권교육으로서의 헌법교육’이란 헌법교육에서 말하는 기본적 인권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의미이다. 특히 학생들의 주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소재로 삼아 학생들이 자신 및 타인을 존중하고 헌법에 나타난 인본주의적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인권’은 국가가 보장해 주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로, 자연권이나 천부인권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여기서 발제자가 언급한 ‘인권’은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하는 기본권을 말한다.

Ⅲ. 초등학생을 위한 헌법 교재의 개발 방향

1. 활용면에서의 교재 개발의 세 가지 측면

헌법교육 전공자나 일반인들에게 소개된 헌법 교재는 시중에 많이 있다. 그리고 초등학생을 위한 헌법 교재도 몇 개가 출판되어 있다. 그러나 이 교재들은 초등학생들이 배우기에 너무 어려우며 초등학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만화나 이야기로 된 교재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헌법교육 교재의 개발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들이 잘 가르치고,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재 개발의 방향을 세우고자 한다.

1) 교수·학습 과정으로서의 교재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헌법교육을 잘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과정안이 잘 제시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수업을 하기 전 수업계획안(lesson plan)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헌법 교재는 첫째로 교사들을 위한 헌법 교재를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생각하였다. 교사들은 헌법의 내용도 알아야 하지만 지식으로서의 헌법이 아닌, 교육으로서의 헌법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도입-전개-정리의 과정에 이르는 수업계획안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본 헌법 교재의 구성은 먼저 헌법에서 가르쳐야 할 주제(목차)를 11가지로 정리한 후에, 그에 따른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뒷부분 <교재 구성>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2) 읽기 자료로서의 교재

둘째로 본 교재 개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읽기 자료로서의 헌법 교재이다. 그런데 읽기 자료의 교재를 만든다고 했을 때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교사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인지, 학생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였다. 그러나 본 교재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초등학생용 헌법 교재나 문제집처럼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수업을 하기 위한 목적임을 초반 논의 과정에서 분명하게 하였다. 따라서 읽기 자료용 교재는 교사들이 헌법 수업을 할 때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어야 할 점, 어려운 헌법 용어 해설, 들려줄 이야기 자료 등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자료로 만들기로 하였다. 모든 교과서에 교사용 지도서가 있는 것처럼, 헌법교육 교재 역시 교사를 위한 지도서가 되도록 읽기 자료를 제시하였다.

3) 활동 자료로서의 교재

마지막으로 헌법 교재는 활동 자료로서의 교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수업은 교사가 진행을 하지만, 학생들이 수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생각하고 토의할 수 있는 자료나 학생들의 생각을 적을 학습지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번 헌법 교재는 매 차시마다 학생들을 위한 학습지나 사례집, 게임, 카드, 만화, 동영상 등이 제시되었다. 이런 자료들은 실험학교 운영 후 최종 보완을 하여 후속 헌법교육 교재 개발에 투입될 예정이다.

2. 기존 교재와의 관련성 및 차별성 고려

현재 개발된 여러 헌법 교재 중 주요 헌법 교재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진행된 교재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으며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1) 미국 교재 <교재명 : We the People, Center for Civic Education>

이 교재는 총 5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4개의 단원이 헌법에 대한 내용이다. 각 단원에는 4~5개의 소단원들이 있다. 교과서 지문 옆에 헌법과 관련된 어려운 용어가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다. 또한 읽을거리와 활동자료가 섞여 있어 교사가 가르치기 좋고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하기에도 좋다. 본 연구에서는 이 교재를 통해 목차 구성 및 활동 내용 등을 참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헌법과 미국의 헌법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성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2) 만화로 된 헌법 교재 <교재명 : 만화로 배우는 우리나라 헌법, 곽한영>

이 교재는 전체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법의 전체 내용을 고루 반영하고 있다. 모든 내용은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만화로 구성되어 있다. 단원 끝에는 간단하게 읽어볼 읽기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 교재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고, 헌법을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표현한 점이 긍정적이다. 그러나 수업에서 활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3) 이야기와 그림 교재 <교재명 : 내가 처음 만난 대한민국 헌법, 이향숙>

이 책은 헌법의 주요 조항을 뽑아 이야기, 동시, 제언 등으로 표현하였다. 그림도 실려 있어 초등학생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다. 선생님이 이야기로 들려줄 수도

40 2009 추계 법과 인권교육 공동 학술 발표회(주제발표3)

있다. 그러나 헌법 내용 중 선택된 조항만이 실려 있어 체계적이지 못하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는 있으나 수업 시간에 사용될 주교재로는 적당하지 못하다.

4) 이야기 교재 <교재명 : 우리들의 인권이야기, 허종렬>

헌법의 주요 정신이 인권 존중이라는 점에서 생각하여 볼 때, 이 교재는 인간에게 필요한 권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인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 정부의 주요 기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고 사회권에 대한 내용도 더 보충해야 할 실정이다.

5) 법교육 교과서 <교재명 : 함께하는 법이야기, 허종렬>

이 교재는 초등학교생들이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 그림, 이야기, 만화, 역할극, 동영상 등을 사용하였다. 또한 교과서와 학습서로의 기능뿐만 아니라 토론의 5단계 기법(PRESS기법)²⁾을 응용하여 토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헌법교육 교재의 내용을 구성할 때 많은 참고가 되었다. 그러나 헌법 영역의 일부분만 다루고 있고 교수·학습 과정안이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다음 표는 위의 교재 5권과 본 헌법 교재를 종합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이 표를 통해 기존 교재와 본 연구의 헌법 교재와의 관련성 및 차별성을 정리하였다.

<표 1> 기존 교재와 본 헌법 교재 비교

교재명	구성	교수학습 과정안	헌법 영역	읽기 자료	활동자료 (학습지)	만화 또는 그림
We the People		X	전체	○	○	○
만화로 배우는 우리나라 헌법		X	전체	○	X	○
내가 처음만난 대한민국 헌법		X	부분	○	X	○
우리들의 인권이야기		X	부분	○	○	○
함께하는 법이야기		X	부분	○	○	○
실험용 헌법 교재		○	전체	○	○	○

2) 'PRESS 기법'이란 토론할 때 주장하고자 하는 요점 먼저 말하기(point), 이유 제시하기(reason), 사례 들어 설명하기(example), 다른 친구의 생각 듣기(share), 다시 요약해서 정리하기(summary)의 단계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함께하는 법 이야기-법, 함께 만들어가기, 2008: 3).

위의 표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교재와 비교를 하여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헌법 교재는 대부분 ‘읽기 자료’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려운 용어나 관련 주제에 대한 여러 재미있는 자료들을 단원 뒤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헌법의 내용을 골고루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시중 교재 중에는 아이들과의 흥미, 작가의 생각에 따라 헌법 내용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의 헌법 교재는 수업 시간에 헌법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헌법 내용이 골고루 들어갔다. 셋째, 초등학생들이 직접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학습지는 생각해 볼 문제가 많고, 학습 정리를 할 때 많이 쓰인다. 넷째, 초등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 교재와 마찬가지로 본 교재에서도 만화, 동영상, 이야기 등의 자료를 많이 투입하려고 노력하였다. 다섯째, 교사를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이 필요하다. 기존 교재에는 교사들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이 없다. 그러나 본 교재는 교사들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이 매 차시 실려 있다. 교사들이 교수·학습 과정안을 보고 수업의 흐름 및 가르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IV. 초등학생을 위한 헌법 교재 개발의 구체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 제시할 초등학생들을 위한 헌법 교재의 틀은, 교사가 수업시간에 잘 가르칠 수 있는 지도서와 같은 교재이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흥미와 자기주도적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재이다. 지금까지 법교육을 위한 교사 및 학생용 교재는 어느 정도 개발되었지만, 헌법 교재는 많지 않았다. 헌법은 다루기 어려운 것, 포괄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현장에서 따로 시간을 내서 가르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헌법 교재의 개발 및 투입으로 학교 현장은 헌법교육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즉, 헌법교육을 통해 학교, 현장 교사, 초등학생들의 헌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헌법이 우리 생활과 관련이 있으며, 그들이 사회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임을 인식시키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1. 헌법 교재의 구성

본 연구에서 헌법 교재의 방향은 교사가 수업시간에 초등학생들에게 헌법을 가르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헌법의 전 내용을 다룰 교재를 만드는

42 2009 추계 법과 인권교육 공동 학술 발표회(주제발표3)

것이다. 연구진들은 여러 헌법 교재를 참고하고 토의를 거듭한 후에 총 11개 단원을 구성하였다. 다음 표는 헌법 교재 단원 구성 및 내용 요소표이다.

<표 2> 헌법 교재 단원 구성 및 내용 요소

순서	단원	내용 요소
1	헌법의 역사와 현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나라 헌법의 역사(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미국 권리 장전) -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헌법의 제정, 개정), 앞으로의 미래 - 헌법의 필요성 및 헌법의 의미 언급 - 많은 사람들이 좋은 헌법을 위해 희생했음을 언급
2	헌법의 구조와 기본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평화주의, 민주 국가 원리, 법치, 사회, 문화 국가 규범원리, 국제법 정의의 원리 제시, 입헌주의(헌법에 입각해 나라 통치) 고려 - 법치주의 자세히 소개(기본권 보장, 국민 주권 주의, 권력 분립(입법/사법/행정/헌법재판소), 견제와 균형, 통합
3	국민의 자유와 권리1 (자유권, 평등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권)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자유권)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4	국민의 자유와 권리2 (사회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기본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 3권, 환경권) - 사례를 통한 귀납식 접근 및 실제 생활 적용
5	국민의 자유와 권리3 (참정권, 청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정권(선거권, 공무담임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어려운 용어 설명보다 학생 주변 사례(전교어린이회 투표)를 이용 - 청구권(신문고 이야기, 자력구제, 학급에서의 청구 방법, 실제 재판 청구권 써 보기)
6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 여러 사례 제시 및 문제 해결 - 국민의 4대 의무 외에 환경보전의 의무 등 포함
7	입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요구 원리 : 의사 형성의 원리 -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 국회의원의 특권 및 의무 - 어린이 모의 국회

8	행정부	- 헌법 요구 원리 : 법치 행정의 원리 - 대통령의 권한, 의무 -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하는 일
9	사법부	- 헌법 요구 원리 : 죄형 법정주의 - 3심제, 재판의 종류, 공정한 판사
10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의 역할(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실현) - 위헌법률심판사례(초등학생과 관련), 모의재판
11	헌법과 나	- 초등학생의 하루 일과 속에서 헌법을 찾아보고, 헌법이 우리 생활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기

현재 헌법 교재는 위의 단위 구성 및 내용에 따라 실험용으로 만들어졌다. 한 개의 단원은 교수·학습 과정안-읽기 자료(교사용)-워크시트(활동지 또는 학습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은 대체로 동기유발, 학습목표 제시, 본시 활동, 정리로 되어 있으며 주로 사례 학습, 역할놀이 학습, 게임, 토의학습, 토론학습, 모의 재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읽기 자료는 교사들이 헌법의 내용을 가르치기 전에 충분히 공부하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아이들에게 들려주거나 나누어줄 사례들도 모두 제시하여 교사들의 편의를 고려하였다. 학습지 역시 교사들이 헌법을 잘 가르치고, 초등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번 헌법 교재에서는 법교육에서 사용되는 사례학습, 역할놀이, 모의재판 등의 방법들이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법교육과 헌법교육의 방법들이 별개일 수 없음을 보여 준다. 특히 귀납식 사례 학습을 많이 고려하였는데, 그 이유는 교사가 헌법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교사들은 처음부터 ‘이 헌법의 내용은 ~이다’가 아니라 ‘이 사례를 보고(읽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였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권리의 이름을 생각하여 보세요.’라는 발문을 많이 사용해야 한다.

2. 실험학교 운영 방법

실험학교 운영은 헌법 교재 개발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개선점을 추출한 뒤 더 나은 헌법 교재를 개발하기 위함이다. 교재 개발이 제대로 되었는지, 헌법교육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교재에 개선점 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면담을 통해 수업을 실시한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헌법교육을 실시하기 전후, 초등학생들의 헌법

44 2009 추계 법과 인권교육 공동 학술 발표회(주제발표3)

에 대한 지식·이해, 기능, 가치·태도, 판단 등의 변화를 비교할 것이다. 다음은 실험 학교 운영 계획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3> 헌법교육 실험학교 운영 계획(11개교)

연구자 (수업자)	수업(단원)	실험학교	학년	
이지혜	1단원, 3단원, 4단원	서울 대림초	6학년	
권혜정 (이수정)	4단원, 8단원, 3단원(자유권)	서울 상원초	5학년	
권영미 (임영희)	6단원, 9단원, 11단원	서울 명덕초	6학년	
김보현	1단원, 7단원, 3단원(평등권)	서울 포이초	5학년	
한희택	5단원(2차시), 10단원, 2단원	서울 동일초	6학년	
고영은 (최정훈)	2단원, 5단원(2차시), 10단원	서울 신창초	6학년	
이윤경	11단원(2차시), 6단원, 9단원	서울 선사초	6학년	
박형근 (박호연)	7단원(2차시), 8단원(2차시)	서울 상곡초	5학년	
수업 자 추 가	이경원	7단원(2차시), 3단원(1차시)	서울 영원초	5학년
	이선영	2단원, 6단원, 9단원	서울 가곡초	6학년
	이지연	4단원, 8단원	서울 도성초	6학년

위 표에서 보듯이 실험학교는 모두 11개교³⁾로 서울 전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수업하는 기간은 약 10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수업 하기 전후로 사전, 사후 검사지를 돌리고 수합하여 교재 개선 및 수업 효과에 참고한다. 헌법 교재는 총 11단원 16차시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한 사람당 3~4차시를 하기로 했으므로 최소한 2명이 2~3차시는 같은 수업을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나중에 수업이 끝났을 때, 같은 차시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서도 듣기 위해서이다. 수업 효과 및 교재 검증, 개선점에 대한 결과는 본 논문 이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3) 실험학교는 연구진들이 속해 있는 8개교 외 추가 3개교를 더 섭외하여 총 11개교, 11개 학급에서 운영한다.

V. 결론

헌법교육은 국민의 기본권 및 국가의 통치 구조, 이념 등을 총 망라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정치교육의 일부로 소개되거나 다른 사회과 영역에 밀려 일부만 다루어져왔다. 이번 초등학생을 위한 헌법 교재는 현장 수업에서의 헌법교육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헌법교육의 의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교육은 현장 교사들의 헌법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동안 현장 교사들이 이용할 교재가 마땅치가 않았다. 특히 수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자료가 부족했다. 하지만 본 연구의 헌법 교재는 교사가 쉽게 헌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과정안 및 읽기 자료를 첨부하였다. 연구진들 역시 현장 교사이기 때문에 현장 교사의 입장에서 헌법을 쉽게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둘째, 헌법교육은 초등학생들이 헌법을 알고 생활 속에서 관심을 갖게 한다. 사실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우리나라 헌법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초등학생뿐만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헌법이 최상위 법으로서 우리나라 모든 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법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헌법과 우리 생활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셋째, 헌법교육은 이론적 교육만이 아닌 실제적인 헌법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헌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헌법 조문이나 이론적인 법체계를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쉽다. 하지만 본 헌법 교재는 현장 교사들이 수업에서 많이 쓰는 방법 및 초등학생들의 경험과 흥미를 고려하였다. 즉 게임, 토론, 역할놀이, 사례학습 등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학습 방법들이 많고, 학생들이 경험하는 사례와 헌법을 관련지어 적용하였다.

헌법 교재를 개발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러한 헌법교육의 의의들을 교육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함이다. 특히 실험학교 운영을 통해 헌법 교재 내용이 보완되고 교사들과 학생들의 의견이 수렴될 것이다. 그 이후 헌법 교재는 헌법교육의 의의에 부합한 목적으로 더욱 발전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곽한영(2009). 만화로 배우는 우리나라 헌법. 법무부.
교육부(2007). 사회과 교육과정.
김대환·박훈(2009). 시민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 한국법교육학회 제7회 심포지엄
발표문.
김현철(2009). 헌법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법교육연구, 4(1), 93-99.
서채연(2007). 고등학교 사회과에 나타난 헌법교육 내용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
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낙인(2008). 민주법치국가 정립을 위한 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법교육연구, 4(1),
134-148.
이상철·김성주(2009). 헌법학개론. 서울: 박영사.
이향숙(2004). 내가 처음 만난 대한민국 헌법. 서울: 을파소.
허종렬(2004). 우리들의 인권이야기. 대한교과서주식회사.
_____(2007). 초등학교 법교육의 방법과 실제-초등학교 법교육의 성격과 내용, 방
법. 서울교육대학교 부설 초등교육연수원.
_____(2008). 함께하는 법 이야기. 법무부.
_____(2009).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관계.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2(1), 73-91.
황남기(2006). 헌법. 서울: 찬글.
Charles N. Quigley & Robert S. Leming(2003). we the people: the Citizen
and the Constitution. Center for Civic Education.
(미국사회과교육학습지주소)
http://www.teach-nology.com/worksheets/soc_studies/constit/
(한국교과서연구재단)
<http://www.ktrf.re.kr/index.jsp>

주제 발표 II

- 초등 도덕교육에서 정보윤리 강화 및
저작권 보호 교육의 방향
- 초등 도덕교육에서의 준법 교육 강화 방안

[주제발표 4]

초등 도덕과에서 정보윤리 및 저작권 보호 교육의 개선 방향

유 병 열(서울교대)

- I. 머리말
 - II. 정보윤리 및 저작권 보호 교육의 주요 내용 체계
 - III. 초등 도덕과에서 정보윤리 및 저작권 보호 교육의 실태와 문제
 - IV. 초등 도덕과에서 정보윤리 및 저작권 보호 교육의 개선 방향
 - V. 맺음말
- * 참고문헌

I. 머리말

오늘날 초등학교에서 정보윤리교육과 저작권 보호 교육을 강화하는 일은 매우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는 정보윤리 및 저작권 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생활 실태가 마음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2004년에 서울 및 인천·경기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¹⁾, 우리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정보화

1) 유병열, “정보윤리 인식 및 정보윤리교육 실태와 개선 방향,”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사회 윤리학』 (경기 고양: 이한출판사, 2005), pp. 608-609. 이 연구는 2004년 3월 말부터 4월 초에 걸쳐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1109명과 같은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 449명 및 학부모 253명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 및 가정에서의 정보윤리 생활과 인식 및 정보윤리교육 실태에 대해 조사, 분석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초등학생의 경우는 4-6학년,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1-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에 소재하고

48 2009 추계 법과 인권교육 공동 학술 발표회(주제발표4)

역기능 현상에 대해 응답 교사들 중 매우 심각하다고 보는 교사들이 25.6%, 심각한 편이라고 보는 교사들이 57.9%, 그저 그렇다고 보는 교사들이 14.7%, 심각하지 않은 편이라고 보는 교사들이 1.8%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의 경우 총 응답자 중 역시 매우 심각하다가 34.8%, 심각한 편이다가 46.2%, 그저 그렇다가 13.8%,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가 4.0%, 전혀 심각하지 않다가 0.8%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의 약 84%와 학부모들의 약 81%, 즉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 정보화로 인한 역기능 현상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²⁾.

그런데 이러한 우려되는 점은 그 후에도 별로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2009년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해 서울·경기 지역에 사는 만 13-18세 청소년 338명을 상대로 실시한 '방송통신 정보 이용 건전화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접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3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 그런가 하면 가장 최근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중·고교생 중 약 52만여 명이 게임 중독 수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중·고생의 7.1%가 게임 과몰입 즉 게임 중독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학교급별 실태를 보면, 고등학생의 게임 중독 수준이 6.7%, 중학생이 7.0%, 초등학생이 7.7%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게임 중독 평균은 7.13%이었는데, 학년이 낮을수록 게임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던 것이다⁴⁾.

저작권 관련 실태도 우려되기는 마찬가지이다. 가장 최근의 예를 보면, 음악이나 뉴스 등 저작권 침해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사람이 지난 해 9만 명을 넘어섰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학급을 단위로 표집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초·중·고등학교 급별로 교사가 직접 학부모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합, 분석하였다.

2) 실제로 학생들의 생활 실태를 보면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만은 아님을 알게 된다. 즉, 같은 조사 연구에서 인터넷 탐닉·중독 여부를 알아보려고 10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5단계로 나눠 응답하게 하였는데, 총 응답 학생들 중 중독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이 5.8%, 중독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 12.7%로 나타났다. 이는 100명 중 약 19명 정도의 학생들이 인터넷에 지나치게 매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인터넷 상에서 폭력물에 어느 정도 노출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 분석 결과에서도 약 반이 넘는 학생들이 인터넷 상에서 폭력물에 노출되고 있으며 20% 정도는 폭력물과 상당히 많이 접촉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연구, pp. 609-615 참조.

3) "청소년 35%, 집 인터넷으로 음란물 봐," 『연합뉴스』, 2009. 4. 15일.

4) "초중고생 52만명이 게임 중독," 『뉴시스』, 2009. 10. 12일.

는데, 이 중 10대 청소년들이 2만 4천여 명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이에 의하면 2006년에 1만 9천여 명이던 저작권 침해 사범이 2007년에는 2만 5천여 명으로 늘어났고, 이어 지난해에는 9만 1천여 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에는 9월 현재 6만 6천여 명이 저작권 침해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10대 청소년이라는 점이다. 10대 청소년들의 저작권법 위반 횟수는 2005년 325건에서 2008년 2만 4천여 건으로 74배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 국민의 위반 횟수 증대가 6.2배이었던데 비하면 엄청나게 증가한 비율이라고 하겠다⁵⁾. 이에 따라 검찰은 저작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청소년 초범의 경우 조사 없이 불기소 각하 해주어 청소년 전과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일을 막았다. 참으로 좋은 지혜를 발휘하여 다행이기는 하지만 씩씩한 마음은 금할 길이 없고 또 언제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이다.

결국 근본적인 대책은,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우선이라고 할 것이다⁶⁾. 그러나 저작권 관련 교육 실태는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저작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과 2009년 상반기에 각종 저작권 교육을 받은 사람은 총 8만 8천여 명 정도로 추계되고 있는데 그나마 교육을 담당할 강사 인력풀의 부족으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⁷⁾.

여기에 더하여 주목할 만한 사실은 지난 8월 2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개정 저작권법 국민인식 조사'에서 저작권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7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아직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이 전체의 57.6%에 달했고, 불법 복제물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이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전에 비해 변화 없다고 답한 비율도 48.3%에 달해 여전히 저작권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던 것이다.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와 청소년들에게 있어 정보윤리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생활 실태가 그리 만족할만한 수준에 있지 못함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더 우려되는 것은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처하기

5) “작년 저작권 침해 9만 명중 10대가 2만명,” 『헤럴드 경제』, 2009. 10. 14일.

6) “처벌 세진 저작권법, 청소년 교육도 강화돼야,” 『중앙일보』, 사설, 2009. 7. 22일.

7) “저작권 교육 실태, 강사 1인이 2968명 한 번에 교육?,” 『문화저널21』, 2009. 10. 13일.

위한 우리 사회와 학교의 교육적 노력이 또한 적지 아니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현실에서 초등 도덕과교육을 통한 정보윤리 및 저작권 보호 교육이 어떻게 추구될 수 있는지를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바른생활과와 3-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도덕과에서 정보윤리 및 저작권 보호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한 후 그 문제를 밝혀내고 개선 방향을 숙고해 보고자 한다. 다만, 분석의 범위는 도덕과 수업을 통한 교육에 한정하고자 한다. 도덕 수업 이외의 도덕교육 기회는 개별 교사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관계로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식적인 바른생활과·도덕과교육 시간에 한정하여 정보윤리 교육 및 저작권 보호 교육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 때 구체적인 분석 자료는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교과서, 보조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우리 현실에서의 바른생활과·도덕과교육은 결국은 이들 자료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II. 정보윤리 및 저작권 보호 교육의 주요 내용체계

초등 도덕과에서 정보윤리 교육 및 저작권 보호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이 문제이며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가야 하는지를 말하려면 먼저 정보윤리 및 저작권법 및 그 보호 문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초등 도덕과에서 정보윤리 교육 및 저작권 보호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석하려면 먼저 그 분석틀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는 정보윤리 교육과 저작권 보호 교육의 내용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일로 구체화되게 된다.

학교 정보윤리교육에서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해 정부 차원에서 제시한 것은 2000년대 초에 내놓은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이 가장 공식적인 것이다. 이에 의하면 정보윤리와 관련하여 “정보의 이해와 윤리”라는 교육 내용 영역을 설정해 놓고, 1단계에서 5단계에 이르기까지 교육내용들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정보기기의 이해, 정보와 생활, 정보의 개념, 정보윤리의 이해, 정보 활용의 자세와 태도, 올바른 정보 선택과 활용, 정보윤리와 저작권, 정보화 사회의 개념 이해, 건전한 정보의 공유, 정보화 사회와 일의 변화 등을 가르칠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⁸⁾. 그러나 그 내용들을 보면 체계성과 논리적 연계성, 중요도와 난이도 등에 따른 위계 구조와 선후 관계, 학생들의 지적·도덕적 발달에

따른 내용 선정 등의 여러 측면에서 불만족스러움이 적지 않다.

따라서 정부의 지침을 기본으로 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한 보다 타당성 있는 교육내용의 열개를 강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수년전에 여러 기관과 학자들 수준에서 논의, 제시된 바들을 검토하여 나름대로 초등학교 정보윤리 교육내용의 체계화를 시도한 바가 있다. 이 때 내용 체계의 기본 틀은 정보사회와 인간, 정보윤리, 네티켓 그리고 정보사회의 역기능에 대한 대처 등의 4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체계는 아래 표와 같다⁹⁾.

초등 정보윤리교육 내용체계

영역	주요 지도 요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정보사회와 인간	·정보사회의 특징 ·정보사회와 인간 생활의 발전	·컴퓨터의 이해 ·컴퓨터의 이로운 점	·정보기기의 종류와 활용 ·정보기기와 우리의 생활	·정보의 의미와 중요성 ·정보와 생활	·정보사회의 의미와 특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올바른 태도	·정보사회의 부정적 모습 ·정보사회의 발전과 인간존엄성	·정보사회에서의 직업과 생활의 변화 ·정보사회에서의 삶의 질 향상
정보윤리	·정보윤리의 기본원칙 ·정보사회의 바람직한 가치범	·컴퓨터에 대한 바른 태도 ·컴퓨터의 관리	·컴퓨터에 대한 바른 태도와 관점 ·컴퓨터 사용에서의 절제와 규율 정신	·인터넷에 대한 이해와 바른 자세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직, 책임	·정보윤리의 의미와 중요성 ·사이버 공간에서의 타인배려와 존중, 친절과 봉사	·정보사회에서의 도덕원리들 ·올바른 정보선택, 활용 및 공유 ·사이버 공간에서의 준법, 공동체의식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타인 저작권의 보호	·정보사회에서의 윤리적 핵심가치들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정, 관용 ·사이버 공간에서의 올바른 도덕판단과 합리적 의사결정 ·정보윤리의 실천적 활동
네티켓	·네티켓의 기본규칙 ·영역별 네티켓	·가정 공용 컴퓨터 사용의 바른 태도	·학교 공용 컴퓨터 사용의 바른 태도	·게시판 예절 ·공개자료실 예절	·네티켓의 기본규칙에 대한 이해 ·전자우편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견교환, 토론시의 예절 ·웹문서 작성	·정보윤리 관련 강령, 계명과 행위규범들 ·컴퓨터 통신과

- 8)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 2000. 8., pp. 3-11 및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 해설서』, 2000. 12., pp. 29-58 참조. 물론 이외에도 정보윤리교육에서 무엇을 다루어야 좋을지에 관해 일찍부터 연구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가 더 있다. 예컨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1998. 1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통신윤리 지도안 내서」, 2000. 11. 등과 같은 것들이 그 좋은 예가 된다.
- 9) 유병열, “정보화시대의 초등학교 정보통신윤리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초등도덕교육』, 제7집, 2001. 10., pp. 108-112; 유병열 외, “초등 정보윤리교육 프로그램과 지도 모형 및 교수자료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한국초등교육』, 제15권 제1호, 2004. 3., pp. 54-66; 유병열 외, “초등 정보윤리교육에 관한 조사실천 연구”,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초등도덕교육』, 제15집, 2004. 8., pp. 191-194 참조.

52 2009 추계 법과 인권교육 공동 학술 발표회(주제발표4)

		예절	예절	·올바른 ·신언어 ·절	통 ·예 ·예절	·대화방 ·예 ·예절	·다른 ·컴퓨터 ·사용(Telnet) ·및 파일 전송 ·(FTP) 예절	정보 제공 및 ·유통의 바른 태 ·도 ·네티켓의 자율 ·적 실천 태도
정보 ·화의 ·문제 ·와 ·극복	·정보사회 ·의 ·각종 ·현 ·상 ··역기능 ··별 ··대처와 ··극복의 ··방법	·컴퓨터 ·와 건강	·건전한 ·컴퓨터 ·놀이/게 ·임	·건전한 인 ·터넷 게임 ··컴퓨터 ··활 ··용의 부정 ··적 ··요소로 ··부터의 자 ··기보호	·정 ··화 ··의 ··순 ··기능과 ··역 ··기능에 ··대한 ··이해 ···바이러 ··스 ··예방과 ··치료	·게임 ··중독 ···통신 ··중독 ···사이버 ··상 ··의 ··언어폭 ··력	·개인 ··정보의 ··보호 ··및 ··통신사 ··기, ··해킹, ··불건전 ··유 ··해 ··사이트 ···음란물 ··중독 ···사이버 ··성폭력 ···과 ··매매 ··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교육내용으로 해야 하는지가 설정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저작권법 그 자체를 교육내용으로 해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저작권의 목적,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자, 저작권의 종류, 저작물 이용 방법, 저작권의 제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등의 영역을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저작권법으로부터 도출해 내고 있다¹⁰⁾.

그러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보호 교육은 법에 나타난 바를 그대로 교육한다거나 법 그 자체를 무시하고 나름대로 교육내용을 설정해서 교육한다거나 하는 것 모두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을 기본으로 하되 그 중에서 초등학생들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내용과 저작권법 외에 교육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나름대로 설정하여 교육내용의 틀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우선 저작권법으로부터는 위 연구에서 제시된 바 중에서 초등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한편 여기에 저작권 보호의 올바른 가치·태도,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 저작권 문제에 대한 바른 판단과 행동 등을 엮어 아래와 같이 교육내용의 체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저작권 보호 교육의 내용체계

구분	내용
저작권 보호의 올바른 가치의식과 태도	· 저작권 보호와 창작문화의 발전 ·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과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 · 저작권 보호를 실천하려는 자세
저작권 및 그 보호	· 창작물의 의미와 저작권의 개념

10) 최윤진 외, 『2006 청소년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연구보고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 참조.

에 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물의 범위 · 저작권의 종류 · 저작권의 보호 기간 ·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법과 제도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 · 이용허락 · 저작물의 제한적 이용 · 법정허락 등 · 저작권 신탁관리, 대리중개업 등 · 저작물 이용의 사례와 실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분쟁 조정(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 등) · 민사상 구제 제도: 손해배상청구권, 침해금지청구권 · 형사상 구제 제도: 명예훼손죄, 부정 발행 등의 죄, 출처명시위반죄 등
저작권 문제에 대한 바른 판단과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피레프트와 카피라이트, 정보트러스트 · 저작권, 저작물 관련 문제에 대한 바른 판단과 결정 ·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타인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 나의 저작물과 저작권 지키기

III. 초등 도덕과에서 정보윤리 및 저작권 보호 교육의 실태와 문제

1. 바른생활과

1) 2007 바른생활과 교육과정

(1) 정보윤리 교육내용

바른생활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표상의 영역은 모두 5개로 되어 있다. 내 일 스스로 하기, 예절 지키기, 다른 사람 생각하기, 질서 지키기, 나라 사랑하기가 그것이다. 이 5개 영역에 걸쳐 설정된 주제는 1학년의 경우는 몸 깨끗이 하기, 바르게 인사하기, 차례 지키기 등 11개이고, 2학년의 경우는 바르고 고운 말 쓰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약속 지키기, 우리나라의 자랑거리 소중히 하기 등 12개가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중 어디에도 정보윤리나 저작권 보호에 관한 내용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¹¹⁾. 따라서 주제 수준에서는 정보윤리교육 내용이 설정되어 있지 않

11) 교육인적자원부, 『우리들은 1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54 2009 추계 법과 인권교육 공동 학술 발표회(주제발표4)

은 셈이다.

다만, 구체적인 학년별 내용 요소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두 가지의 정보윤리 교육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즉, 2학년의 내 일 스스로 하기 영역 중 ‘(태) 자기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기’라는 주제 하에 ‘③ 컴퓨터 사용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실천하기’라는 내용 요소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그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역시 2학년의 예절 지키기 영역 중 ‘(개) 바르고 고운 말 쓰기’라는 주제 하에 ‘② 인터넷상에서 바르고 고운 말 쓰기’라는 내용 요소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학년 바른생활과 전체를 놓고 보면 일단 1학년에서는 정보윤리교육과 관련한 내용 요소가 없고 2학년에만 약간 설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양적 비율을 보면 1학년과 2학년 전체의 내용 요소수가 총 61개(1학년 30개, 2학년 31)인데 이 중 2개가 정보윤리 교육 내용이니 그 비율은 약 3%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저작권 보호 교육내용

2007 바른생활과 교육과정만을 놓고 보면 저작권 보호 교육에 연관된다고 보여지는 내용은 없다고 할 수 있다.

2) 2007 바른생활과 교과용 도서

(1) 정보윤리 교육내용

학년 학기	구분	쪽	내용	비고
1-1	교과서	9	1. 즐거운 학교 생활 - 컴퓨터실에서 지켜야 할 규칙	- 교과서에는 삽화만 제시되어 있고 관련 내용은 지도서에 실려 있음
		52	4. 바른 자세 - 바르게 앉고 서는 방법과 관련하여 컴퓨터를 사용할 때의 바른 자세를 간단히 다룸	- 교과서에는 삽화로만 제시, 많은 바른 자세 중의 일부로 다루고 있음
	생활의 길잡이			- 생활의 길잡이 상에 컴퓨터, 정보윤리 관련 내용이 직접 등장하는 바는 없음
	지도서	55, 131, 132	- 교사용 지도서: 컴퓨터를 함부로 다루지 않고 잘 사용해야 함을 강조 - 컴퓨터 사용시의 바른 자세	

1-2	교과서	48 - 학교에서 함께 쓰는 물건 중의 하나로서 컴퓨터실에 있는 컴퓨터와 그 외 물건들에 대해 우리 모두의 것이므로 소중히 잘 써야 한다는 내용	- 교과서에는 삽화로만 제시 - 학교에서 공공으로 사용하는 많은 물건들 중의 하나로서 다루고 있음
		93 - 겨울 방학을 알차게 - 컴퓨터를 이용한 게임을 너무 오래 하지 않기	- 교과서상에는 삽화로만 제시
	생활의 길잡이	67 - 겨울 방학을 알차게 -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아동에게 그 어머니가 타이르는 장면을 통해 게임을 알맞게 하는 내용을 다룸	- 어머니가 “게임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라고 말하는 장면으로서 교육적으로 그리 바람직한 방식은 아닌 듯
	지도서	162 - 컴퓨터를 소중히 잘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 248 - 게임 너무 오래 하지 않기라는 지도 내용이 진술되어 있음	
2-1	교과서	16, 23 - 나의 하루 생활 알아보기에서 학교에서 집에 오면 컴퓨터를 이용한 공부하기 18 - 가정에서 내가 할 일을 계획해 보기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때 정해진 시간에만 사용하기를 제시	- 정보윤리교육 관련 1개 단원 총 4시간 투입 - 컴퓨터 사용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컴퓨터 사용을 통해 하는 일, 컴퓨터를 바르게 사용하기, 계획 세워서 실천하기 등에 2차시 투입
		72-83 7. 컴퓨터를 바르게 사용해요 ○ 계획을 세우 컴퓨터를 사용해야하는 까닭 알고 실천하기 - 컴퓨터 사용의 좋은 점과 나쁜 점 -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는 일 - 컴퓨터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 계획을 세워 컴퓨터를 사용하기 - 자기의 컴퓨터 생활 점검하여 개선해 가기 ○ 인터넷을 이용할 때 바르고 고운 말을 써야 하는 까닭 알고 실천하기 - 인터넷상의 언어 오염 인식하고 바르고 고운 말 써야 하는 까닭 알기 - 인터넷에서 바르고 고운 말 쓰려는 의지 다지기 - 인터넷에서의 자신의 언어생활 되돌아보고 개선해 가기 - 인터넷에서의 바른 언어 예절 알기 - 사이버 공간에서 잘못 사용한 말 고치기	
	생활의 길잡이	66-75 7. 컴퓨터를 바르게 사용해요 - 위 교과서의 단원에 대응하여 생활의 길잡이도 계획을 세워 컴퓨터 사용기와 인터넷 이용 시의 언어 예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예절에 2차시 투입

56 2009 추계 법과 인권교육 공동 학술 발표회(주제발표4)

	지도서	65, 69 170-193	- 집에 와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부하기와 계획을 세워 정해진 시간에만 컴퓨터 사용하기 - 교과서와 생활의 길잡이의 제7단원 컴퓨터를 바르게 사용해요 관련 학습지도 내용 및 안내	
2-2	교과서	-	-	-
	생활의 길잡이	-	-	-
	지도서	-	-	- 지도서에도 정보윤리교육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는 바는 없음

(2) 저작권 보호 교육내용

학년 학기	구분	쪽	내용	비고
2-1	교과서			
	생활의 길잡이			
	지도서	190 192	- 학습지 형태로 제시된 “인터넷 관련 교육자료”에 저작권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안내물 제시 - “나의 인터넷 예절 실천표”의 내용 중 일부로서 ‘자료를 불법으로 복사하지 않습니다.’라는 항목 제시	- 교과서에 등장해 있지 않은 관계로 반드시 지도하게 될지 여부가 불확실함

1, 2학년 전체에 걸쳐 정보윤리교육 관련 내용이 타 교육내용 속의 일부로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총 6회이고, 별도로 정보윤리교육만을 집중적으로 실행하는 단원이 2학년에 1개 단원이 설치되어 있다.

1학년에서는 주로 컴퓨터를 아끼고 소중히 해야 한다는 점, 컴퓨터를 사용할 때의 바른 자세 등을 가르치는 데 중점이 두어지고 있고, 게임을 알맞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다.

2학년에서는 컴퓨터 사용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컴퓨터를 소중히 하고 잘 사용하기, 게임 너무 오래 하지 않기, 계획을 세워 컴퓨터 사용하기, 인터넷상에서의 언어 예절 등이 주된 교육내용이 되고 있다.

1, 2학년 전체에 걸쳐 교과서와 생활의 길잡이 상에는 저작권 보호 교육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다만, 1, 2학년 전체에 걸쳐 저작권 보호교육 관련 내용은 지도서에 2회 등장하고 있다. 즉, 2-1 교사용 지도서에 학습지 형태로 저작권 보호의 여러 가지 방법, 자료의 불법 복사 금지 등의 내용이 등장해 있으나 반드시 지

도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또한 교사들을 위해 저작물과 저작권,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등에 대한 안내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하겠다.

2. 도덕과

1) 제7차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

(1) 정보윤리 교육내용

제7차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은 그 내용체계를 구성함에 있어 영역을 개인 생활, 가정·이웃·학교생활, 사회생활, 국가·민족 생활의 4개로 나누고, 20개의 주요 가치·덕목들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 영역에 걸쳐 주요 지도요소들을 설정하고 있는데, 3-6학년 전체에 각 학년별로 지도 요소 수는 10개씩 총 40개가 설정되어 있다. 이들 지도요소들을 살펴보면 정보윤리교육적인 요소는 하나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¹²⁾.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당시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을 개발할 당시의 시대사회적 분위기나 연구진들의 의식상에 정보윤리교육을 강조하고 중시하고자 하는 관점이 충분하지 못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도 요소들을 한 단계 더 상세화 하여 제시한 학년별 내용 요소 부분으로 들어가면 정보윤리 관련 내용 요소가 단 1회 언급되어 있다. 즉, 4학년 사회생활 영역에서 ‘㉠ 공공장소에서의 예절과 질서’라는 내용 요소를 지도함에 있어 ‘㉡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예절과 질서’를 가르치도록 하면서 그 말미에 괄호 속에 ‘정보 통신 예절 교육 내용 포함’이라고 명기함으로써 정보통신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지도하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¹³⁾. 그러나 정작 교과서와 생활의 길잡이 해당 단원을 보면 정보윤리 관련 내용이 없어 서로 호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렇다면 정보윤리 관련 교육내용을 그 양적 측면에서 보면, 3-6학년 초등 도덕과의 내용요소의 수가 전체적으로 160개 설정되어 있는데¹⁴⁾ 그 중에서 1개 정도에서만 관련지어 언급되고 있으니 크게 잡아도 0.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12) 교육부,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6], 1997. 12., p. 26의 내용체계표 참조.

13) 교육부,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6], 1997. 12., p. 31 참조.

14) 교육부,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6], 1997. 12., pp. 27-36 참조.

58 2009 추계 법과 인권교육 공동 학술 발표회(주제발표4)

(2) 저작권 보호 교육내용

제7차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상 법교육적인 것으로서는 직접적으로는 6학년 사회 생활 영역의 ‘법과 규칙을 잘 지키기’라는 요소 1개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¹⁵⁾. 물론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것까지 하면 예컨대 3학년의 ‘거리·교통질서 지키기’, 4학년의 ‘공공 장소에서의 예절과 질서’, 5학년의 ‘타인의 권익 존중’과 ‘공익 추구의 생활’, ‘민주적 절차 준수’ 등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법교육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법교육과 관련되는 것으로서는 ‘법과 규칙을 잘 지키기’라는 지도 요소만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는데, 이 경우에도 이는 일반적인 준법교육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와 특별히 관련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2) 제7차 도덕과 교과용 도서

(1) 정보윤리 교육내용

학년 학기	구분	쪽	내용	비고
4-1	교과서	84	5. 우리는 정다운 친구라는 단원 중의 소제제 ‘집에 가는 길’ - 학교 공부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PC방에서 놀다 가자는 친구의 제안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내용 - 컴퓨터방에서 놀다가 어머니께 걱정 끼쳐 드린 일 상기, 컴퓨터방에 가면 좋지 않다는 선생님의 말씀 상기	- 친구간의 진정한 우정을 다루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므로 정보윤리교육과는 간접적으로만 관련됨. - 한 차시 수업내용 중의 일부로 다루어짐.
	생활의 길잡이	80	- 위 교과서와 대응되는 학습 활동 내용	
	지도서	152-1 53	- 위 ‘집에 가는 길’과 관련한 교수-학습 해설	- 참고자료 부분 등에서 좌측의 것 외에도 더 이상 정보윤리교육 관련 내용 없음
4-2	교과서	48-4 9	○ 3. 공정한 생활라는 단원의 소제제 ‘인터넷에서 배긴 과제’ - 인터넷에서 얻은 다른 사람의 자료를 이용하여 쉽게 과제를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직접 과제를 함으로써 선생님께 칭찬받았다는 내용	- 정보의 올바른 획득과 사용에 관한 내용 - 한 차시 수업내용 중의 일부로 다루어짐.

15) 교육부,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6], 1997. 12., p. 26의 내용체계표 참조.

		86 -8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함을 강조 ○ 5. 우리나라 우리 조국이라는 단원의 소제제 ‘정보 지킴이’ - 해킹에 의해 국가 주요 기관을 공격하는 경우 안보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 - 정보 지킴이가 나라 지킴이임을 강조 - 타인의 정보를 함부로 침해하지 말아야 함을 질문으로 제시 - 컴퓨터로 정보를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자세를 질문으로 유도 <p>* 교육과정상 4학년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예절과 질서’라는 지도 요소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예절교육’ 관련 내용을 다루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교과서와 생활의 길잡이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의 올바른 획득과 사용 - 악의의 해킹(크래킹) 금지 - 한 차시 수업내용 중의 일부로 다루어짐.
	생활의 길잡이	44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인터넷에서 배긴 과제’에 대응하는 활동 내용 - 청와대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인터넷 신문고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을 이용한 제도를 소개하는 것으로서 정보윤리교육과는 직접 관련이 없음
	지도서	112 -1 13, 163 1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인터넷에서 배긴 과제’, ‘정보 지킴이’와 관련한 교수-학습 해설 - ‘한국 CIH 바이러스의 최대 피해국’이라는 참고자료를 싣고,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를 알리고 대비해야 함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및 생활의 길잡이와 관련한 내용 이외의 것으로 1개 참고자료만 담겨 있음
5 학 년	교과서	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서로 존중하는 태도라는 단원의 소제제 ‘인터넷과 다른 사람들의 권익’ - 인터넷의 장단점을 소개하면서 유해 정보의 유포, 타인 개인정보의 침해와 유용, 개인 인격이나 사생활 침해, 타인 저작물의 무단 사용과 권리 침해 등의 문제를 언급함 - 올바른 인터넷 사용의 예절에 대해 질문으로 학습을 유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윤리교육을 직접 겨냥한 내용이지는 하나, 한 차시 수업내용 중의 일부로만 다루어짐.
	생활의 길잡이			
	지도서	152 -1 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인터넷과 다른 사람들의 권익’과 관련된 교수-학습 활동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자료 등에서 좌측의 것 외에 더 이상 정보윤리교육 관련 내용 없음

60 2009 추계 법과 인권교육 공동 학술 발표회(주제발표4)

6 학 년	교과서	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함께 지키자라는 단원의 선택활동 ‘크래킹, 그 피해를 생각해 보셨나요’ - 한 학생이 장남 삼아 크래킹을 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로 인해 큰 피해가 났음을 지적 -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고 실천해 볼 것을 언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윤리 교육 내용 중 타인 컴퓨터와 정보 침해 금지, 크래킹 금지와 관련됨 - 한 개 차시의 교육내용 중 일부로 다루어짐 - 인터넷의 긍정적 사용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나,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제외 동포에 대한 사랑과 한민족 유대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서 정보윤리교육적 성격은 약함
		1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민족이라는 단원의 소제에 ‘사례2: 한민족 네트워크’ - 인터넷에 한민족 네트워크를 개설하여 전세계 우리 동포들이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내용 	
	생활의 길잡이	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함께 지키자라는 교과서상의 단원에 대응하는 학습활동 - 정보사회의 통신 예절 측면에서 언어 예절, 악성 바이러스 유포 금지, 타인 비난이나 타인 무시 자제, 전자우편 예절 등을 언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차시의 교육내용 중 일부로서 다루어짐
	지도서	2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크래킹, 그 피해를 생각해 보셨나요’ “사례2: 한민족 네트워크’ 관련 교수-학습 활동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자료 등의 부분에서 좌측의 내용 외에 더 이상 정보윤리 교육 관련 내용 없음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초등 3학년에서는 정보윤리교육 관련 내용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4-6학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윤리 관련 내용은 교과서와 생활의 길잡이 모두에 걸쳐 총 8회 다루어지고 있으나, 이 중 정보윤리교육과 직결되는 것은 5회 정도이다.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은 1) 정보사회에 대한 이해, 2) 정보윤리에 대한 이해, 3) 네티켓, 4) 정보사회의 역기능에의 대처라는 4개 영역 중 주로 3) 영역에 치우치고 있으며, 1)과 2) 영역은 거의 없고 4)의 영역도 극히 일부가 다루어지고 있다.

정보윤리 영역 중 3)과 4) 영역이 다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깊은 탐구를 통한 가치규범의 내면화와 올바른 판단능력 함양 및 실천 의지와 행동 성향의 교양을 기하기보다는 단순한 언급이나 역설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정보윤리 교육 관련 내용들이 한 차시 또는 두세 차시를 거쳐 가면서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깨닫고 체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 차시의 일부 정도로 매우 미약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2) 저작권 보호 교육내용

학년 학기	구분	쪽	내용	비고
4-2	교과서	48-49	○ 3. 공정한 생활라는 단원의 소제제 ‘인터넷에서 베낀 과제’ - 인터넷상의 올바른 정보 획득과 사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바, 타인 저작권 존중과 보호, 타인 저작물에 대한 바른 사용이라는 저작권 보호적 성격은 약함	- 타인 저작물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간접적 교육의 성격이 강함
		54	○ 위와 같은 단원의 소제제 ‘보고 쓴 답안’ - 수학 시험을 보는 시간에 옆자리 친구의 답안지를 보고 쓰고 싶은 유혹에서 고민하는 내용	- 타인의 답을 보고 쓸 것인지 여부를 다루는 정직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서 저작권 보호적 성격은 매우 약함
	생활의 길잡이	-	-	-
	지도서	112-113, 117-118	- 위 ‘인터넷에서 베낀 과제’, ‘보고 쓴 답안’과 관련한 교수-학습 해설	- 좌측 내용 외에 저작권 보호 관련 내용 없음
5 학년	교과서	68	○ 5. 서로 존중하는 태도라는 단원의 소제제 ‘인터넷과 다른 사람들의 권익’ - 타인 저작물의 무단 사용과 권리 침해 문제를 언급함	- 저작권 보호 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있으나 2줄 정도의 언급에 그침
	생활의 길잡이	-	-	-
	지도서		- 위 ‘인터넷과 다른 사람들의 권익’과 관련된 교수-학습 활동 해설	- 좌측 내용 외에 저작권 보호 관련 내용 없음
6 학년	교과서	-	-	-
	생활의 길잡이	74	○ 6학년의 ‘5. 함께 지키자’ 단원의 생활의 길잡이상의 ‘정보 사회의 통신예절을 알고 지킵시다.’ -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되어 처벌을 받습니다.’라는 진술	- 한 차시의 교육내용 중 일부로 다루어짐
	지도서	202	- 정보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사례나 고쳐야 할 점을 모듈별로 토의하게 하는 활동을 통해 위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 저작권법 위배 등과 관련지어 다룰 가능성 있음	- 좌측 내용 외에 저작권 보호 관련 내용 없음

위의 표에서 보듯이 3학년부터 4학년 1학기까지 저작권 보호 교육과 직접 관련

62 2009 추계 법과 인권교육 공동 학술 발표회(주제발표4)

되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

4학년 2학기부터 6학년까지 도덕 교과서와 생활의 길잡이에 저작권 보호 내용이 총 4회 등장하고 있으나 직접 관련되는 것은 2회에 그치고 있다.

타인 저작물을 무단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 타인의 저작물 관련 권리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 저작권법이 존재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다루고 있는 타인 저작물이 인터넷상의 저작물이거나 소프트웨어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저작물 및 저작권의 범위에 있어 매우 좁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앞에서 설정한 저작권 보호 관련 교육내용 체계에 터하여 본다면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 방법 및 저작권 침해 방지 중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내용만이 다루어지고 있고 그나마도 언급 정도만 해놓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나 생활의 길잡이 상에 설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간단한 진술이나 당위성을 강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제대로 된 이해와 내면화를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 차시의 일부로서만 다루어지고 있을 뿐 충분한 시간과 내용량이 투입되지 못해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집중적인 탐구와 학습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IV. 초등 도덕과에서 정보윤리 및 저작권 보호 교육의 개선 방향

1. 바른생활과에서의 개선 방향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바른생활과에서 정보윤리 및 저작권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과정에서부터 이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 즉, 현재 바른생활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보면 5개 영역에 속하는 대주에 밑에 1학년에서는 11개 그리고 2학년에서는 12개의 활동 주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 활동 주제 차원에 정보윤리 및 저작권 관련 내용이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바른생활과 교육과정 개정 시에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윤리 및 저작권 보호 관련 교육내용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교육과정은 과거의 주기적 개정 방식이 아니라 수시 개정 방식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은 더욱 필요하고 또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높게 존재한다.

위와 같이 교육과정에 다루어야 할 주제 내지 지도내용 요소들을 설정한 후 이를 단원으로 구체화해 내는 일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정보윤리 및 저작권 보호 교육에 관해 최소 3-4시간씩 투입될 수 있는 단원이 교과서상에 등장해야 효율적이고도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현대 정보사회에서 옳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정보윤리 및 저작권 보호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교사용 지도서에 이와 관련된 이론과 지도의 실제 및 자료들을 풍부하게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동시에 각종 교사 연수에서도 저학년 정보윤리 및 저작권 보호 관련 교육이 강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도덕과에서의 개선 방향

1) 교육과정 수준에서의 개선

(1) 2007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현황

가. 정보윤리 교육내용

2007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총 18개의 주요 가치·덕목들을 설정하고 있는 가운데, 영역을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영역,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영역, 나라·민족·지구 공동체와의 관계 영역, 그리고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영역으로 나눠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각 영역별로 주요 지도 요소들을 설치하고 있는데 3학년과 4학년에서는 각각 8개씩 총 16개를 그리고 5학년과 6학년에서는 각각 10개씩 총 20개를 설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정보윤리교육과 관련된 것으로서는 4학년의 ‘인터넷 예절’과 5학년의 ‘게임 중독의 예방’이라는 2개의 지도 요소가 설정되어 있다¹⁶⁾. 따라서 지도 요소 수로만 놓고 보면 2007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정보윤리교육 내용은 약 5.5%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지도 요소들은 교과서를 개발할 때 단원이 되는 것으로서 보통 3시간씩을 투입하게 된다.

따라서 일단 제7차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과 비교해 본다면 2007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정보윤리교육 관련 내용이 꽤 증대되었음을 알게 된다. 즉, 정보윤리교육을 전적으로 담당할 단원이 2개 생겼으며 3-6학년 기간 동안 공식적

16) 교육인적자원부,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별책 6】, 2007. 2.(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 4의 내용체계표 참조.

64 2009 추계 법과 인권교육 공동 학술 발표회(주제발표4)

으로 최소 6시간 정도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정보윤리교육이 많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제7차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을 개발할 당시에 비해 정보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었고 교육과정 개발진에서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저작권 보호 교육내용

제7차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2007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상에서도 저작권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은 없다. 물론 법교육적 측면의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법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서 6학년의 ‘준법과 규칙준수’라는 지도요소가 있고,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서, 4학년의 ‘약속을 지키는 삶’과 ‘공중도덕’이 있고, 6학년에 ‘공정한 행동’ 등이 있다. 이들 요소들은 각각 추후 교과서상에 3시간이 투입되는 단원으로 구체화되게 된다.

그러나 교육과정상 저작권 보호와 관련되는 내용은 등장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교육과정 개발 당시 관련 연구진 및 관련 인사들 자체에 저작권 보호 관념이 애당초 부족했던 데 그 원인이 있지 않은가 여겨진다.

(2) 도덕과 교육과정 수준에서의 개선 방향

정보윤리 교육 관련 내용은 초등 도덕과교육이 주당 1시간인 한 현재보다 더 많이 양적으로 늘리는 문제는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양은 현행과 같은 수준을 확보하되 다루는 교육내용에서의 적절성을 높이고 심도를 강화하는 방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현행처럼 초보적 수준의 네티켓이나 게임 중독 문제 정도만을 다룰 일이 아니라 정보윤리교육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는 여러 영역을 비교적 고르게 다루도록 하여 초등 도덕과를 통한 정보윤리교육의 범위와 계열에 있어서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행과 같이 교육과정 수준에서 저작권 보호 교육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상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바른생활과와 마찬가지로 도덕과 역시 이제는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체제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관련 기관과 학계, 전문가 및 학교 현장의 노력을 통해 교육과정상에 저작권 관련 내용요소들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 보호 교육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상에 설정할 때 그에 관한 단원이 만들어질 수 있을 정도로 내용체계표상의 지도 요소 수준으로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

지수이다. 그러나 정보윤리교육이나 법교육을 다루는 단원의 한두 차시 수준에서는 가르쳐질 수 있을 정도로 학년별 내용요소로 설정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2) 교과용 도서 수준에서의 개선

(1) 현재 개발되고 있는 교과용 도서에서의 현황

가. 정보윤리 교육내용

* 분석 자료는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실험본을 대상으로 하였음.

학년 학기	구분	쪽	내용	비고
4-2	교과서	30-34	제2단원. 나는 멋있는 네티즌 ○ 1차시: 우리가 가꾸는 인터넷 세상 - 인터넷 예절의 의미와 중요성 - 사이버 공간의 의미와 기능, 특성 - 전자우편 예절 - 우리들이 지켜야 할 인터넷 예절들: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할 때의 바른 자세와 시간 관리 등, 인터넷으로 소식을 전하거나 대화할 때의 예절, 인터넷에서 지식/정보를 얻거나 올릴 때의 예절, 인터넷에서 자료나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사용할 때의 예절 - 인터넷 언어 예절 - 정말 당신 것이 맞습니까?-영화, 음악은 물론 인터넷상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 - 인터넷상에서의 언어파괴 금지	정보사회의 특징, 정보윤리에 대한 이해, 정보화의 역기능 등의 영역보다는 주로 네티켓 영역에 치우쳐 있음
		36-41	○ 2차시: 어떻게 해야 하지? - 악성 댓글의 폐해 - 사이버 공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한 바른 판단 - 문제 인식 및 사태 분석 - 여러 대안의 설정 및 결과 검토 - 입장의 선택과 그 근거 분석 - 사실적 증거와 가치원리의 검사 - 가장 최선의 적절한 해결 방안에 대한 판단, 결정 - 인터넷을 사용할 때의 바른 자세에 대한 실천 의지 - 아름다운 댓글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로 실천해 보기 ○ 3차시: 우리는 멋진 네티즌, 인터넷 예절을 실천해요 - 인터넷 예절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불쾌한 경험을 통한 그 중요성 인식	

66 2009 추계 법과 인권교육 공동 학술 발표회(주제발표4)

	42-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 정보나 좋지 못한 정보 유포시의 문제점과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일 - 아동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터넷 예절 조사하여 파악하기 - 인터넷 중독 여부 검사하고 예방 또는 치료하기 - 자신의 인터넷 생활을 확인해 보고 일주일 동안 인터넷 사용 계획 세운 후 실천해 보기 - 인터넷 예절의 5가지 원칙 - 인터넷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사례 조사 및 본받기 - 인터넷 예절을 배울 수 있는 사이트를 조사 방문하고 배우기 - 인터넷 예절에 관한 학습내용의 종합정리와 실천 다짐하기 	
생활의 길잡이	27-49 29-33 39-41 46-49	<p>제2단원 나는 멋진 네티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1차시: 우리가 가꾸는 인터넷 세상, 2차시: 어떻게 해야 하지?, 3차시: 우리는 멋진 네티즌, 인터넷 예절을 실천해요와 대응하는 관련 학습 내용 및 활동 ○ 위의 내용 외에 자율적 학습 부분의 내용들 • 1차시: 우리가 가꾸는 인터넷 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 아이디 등을 도용하지 않기 - 사실이 아닌 내용이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유포하지 않기 - 불법 복제 자료 내려 받지 않기 - 유익한 자료에 대해 감사하기 - 게임할 때의 예절 지키기 -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범 사례 알기와 본받기 - 휴대 전화 등 모바일 네트워크를 포함한 모든 네트워크 상에서의 통신 예절 배우기 - 인터넷 예절에 관한 십자 낱말 풀이하기 • 2차시: 어떻게 해야 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물달기 운동에 대한 소개와 선플의 의미, 특성, 좋은 점 파악 및 선플을 직접 써보기 - 아름다운 댓글의 좋은 점 알기 -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행위 원칙 및 마음이 집에 대한 이해 • 3차시: 우리는 멋진 네티즌, 인터넷 예절을 실천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우편 사용할 때의 바른 방법 및 스팸메일 처리 요령익히기 - 바르고 고운 말을 써서 전자우편 보내기 실습해 보기 - 인터넷 예절 지수 알고 반성하며 발전시켜가기 - 사이버 공간에서의 바른 생활의 좋은 점 알고 실천의지 다지기 	

	지도서	120-143 125-127 131-134 138-143	<p>○ 위 교과서 2단원에 관련된 교수-학습 안내 ○ 위 안내 외의 정보윤리교육 내용 또는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예절 10계명 - 사이버 공간에서의 한글 파괴 사례수와 현상 및 언어파괴의 심각성 - 악플러들의 행동상의 특징 - 아름다운 댓글을 쓰는 사람이 되는 법 - 아름다운 댓글의 예와 감상 사이트 소개 - 정보윤리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 방법 - 타인 자료를 이용할 때의 예절과 저작권 관련 안내 - 인터넷 중독의 의미와 특징, 치료 관련 안내 - 대화방에서의 네티켓 안내 - 전자우편 직접 써보면서 익히기 대안활동 안내 - 인터넷 예절 관련 수행평가 자료 	정보화의 역기능에 해당되는 인터넷 중독 외에는 대부분 네티켓 영역에 치우쳐 있음
5학년	교과서	3-8 9-14 15-21	<p>제4단원 밝고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p> <p>○ 1차시: 책임 있는 네티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공간의 빛과 그림자에 대한 이해 - 정보에 대한 바른 자세 갖기: 참 정보와 거짓 정보의 구별, 개인 정보 보호 방법, 거짓 정보 유포 금지, 좋은 정보 바르게 사용하기 등 -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바른 자세: 저작권의 뜻, 정보 무료 제공의 좋은 사례, 저작권 침해 및 법적 책임에 대한 이해, 관련 사이트 탐방 및 실천 의지 -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법적 책임 - 정보윤리에서의 중요 가치.덕목 탐구 - 정보윤리 관련 표어 제작 발표와 정보윤리를 실천하려는 의지 다지기 <p>○ 2차시: 게임의 주인과 노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에 중독되어 가는 과정과 현상에 대한 사례 탐구 - 게임 중독의 증상과 위험성 - 게임 중독의 예방과 치료법, 나의 게임 중독 여부 검사해 보기 - 인터넷 중독의 여러 종류와 그 예방법 알기 - 나는 인터넷 게임의 주인인지 노예인지 탐구하고 반성, 개선해 가기 - 인터넷 게임 안 하는 휴요일 정하고 실천하기 - 게임 중독 증상을 보여주는 변명 알아보기 <p>○ 3차시: 함께 가꾸는 사이버 생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정한 인터넷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문제의식 지니기 - 저작권 보호와 정보 공유의 입장을 여러 면에서 탐구해 보기 	게임 중독과 인터넷 중독의 좀더 명확한 구분 구성 필요

68 2009 추계 법과 인권교육 공동 학술 발표회(주제발표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자료와 공유해도 좋을 자료에 대한 이해 -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표준어 사용에 대한 여러 입장 탐구 -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언어 사용으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위한 방안 탐구하기 - 인터넷 실명제와 익명성 보장에 대한 입장을 탐구해 보기 - 사이버 공간에서 서로 협력하여 유익하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사례 탐구와 그러한 세상 만들기 구상해 보기 - 선플 달기 운동에 대한 이해와 실천 의지 다지기 - 사이버 공간에서 아름답게 생활하기 위한 실천 계획과 직접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기 - 올바른 사이버 생활에 대한 학습내용의 종합 정리와 마음 다지기 	
	생활의 길잡이	<p>2-18 제4단원 밝고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 위 1차시: 책임 있는 네티즌, 2차시: 게임의 주인과 노예, 3차시: 함께 가꾸는 사이버 생활과 대응하는 학습 내용 및 활동 ○ 위의 내용 외에 자율적 학습 부분의 내용들</p> <p>6-7 • 1차시: 책임 있는 네티즌 - 전자우편을 통한 사기에 주의하기 - 정보사회의 두 얼굴에 대한 이해와 정보우리의 의미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마음 자세</p> <p>12-13 • 2차시: 게임의 주인과 노예 - 자녀의 게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과 게임 제작자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판단해 보기 - 어느 9세기 왕의 충고를 통한 게임과 관련한 중용의 자세 익히기</p> <p>19-20 • 3차시: 함께 가꾸는 사이버 생활 - 자기의 소중한 자료를 기꺼이 공유하는 모범 사례 소개 - 저작권 기증의 모범 사례 소개 - 저작권 자유 이용 사이트 소개</p>	저작권 존중 및 저작권 보호 준수 관련 자료 부족	
	지도서		개발 예정	
6학년	교과서		개발 예정	
	생활의 길잡이			
	지도서			

나. 저작권 보호 교육내용

학년 학기	구분	쪽	내용	비고
4-2	교과서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시: 우리가 가꾸는 인터넷 세상에서 - 인터넷에서 지식/정보를 얻거나 올릴 때의 예절 - 인터넷에서 자료나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사용할 때의 예절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시: 나는 멋진 네티즌에서 - ‘정말 당신 것이 맞습니까?’ 라는 제하에 인터넷상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 	
	생활의 길잡이	29	- 불법 복제 자료 내려 받지 않기	
	지도서	138	- 타인 자료를 이용할 때의 예절과 저작권 관련 안내	
5 학년	교과서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이해 - 저작권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것들에 대한 이해 	
	생활의 길잡이	1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의 소중한 자료를 기꺼이 공유하는 모범 사례 소개 - 저작권 기증의 모범 사례, 저작권 자유 이용 사이트 소개 	
	지도서		개발 예정	
6 학년	교과서		개발 예정	
	생활의 길잡이			
	지도서			

4학년의 경우 정보윤리교육 4영역 중 주로 네티켓 영역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네티켓 이외 영역인 정보사회에서의 정보사회의 의미와 특징 및 바람직한 삶의 자세, 정보윤리의 기본 원칙과 주요 가치규범, 정보사회의 역기능에 대한 이해 및 대처 등의 측면에 관련된 내용들이 현저하게 적음을 알게 된다.

6학년의 경우 정보윤리의 여러 영역을 4학년의 경우보다는 더 다양하게 다루고 있으나, 여전히 정보사회의 특징과 바람직한 삶의 자세, 정보윤리의 원칙, 가치규범 등에 대한 이해 측면은 부족하고, 정보화의 역기능 분야도 게임 중독 부분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 개발되고 있는 교과서 및 생활의 길잡이에서는 정보윤리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2개의 단원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지만, 동시에 이 2개의 단원 외에서는 정보윤리교육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위 표에서 볼 때 새로 개발되고 있는 초등 4학년에서의 저작권 보호 교육내용은

70 2009 추계 법과 인권교육 공동 학술 발표회(주제발표4)

현저하게 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저작권 보호 교육과 관련하여 제2단원 나는 멋있는 네티즌의 교과서, 생활의 길잡이, 지도서 전체에 걸쳐 3회 정도 언급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5학년의 경우에도 저작권 보호 교육내용은 이전 교육과정기보다는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다소 미흡한 형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저작권 및 저작권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것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는 있지만, 앞에서 설정한 저작권 보호 교육내용 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제한된 범위의 내용들만이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정보윤리를 다루는 위 2개의 단원 외에서는 저작권 보호 교육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재 개발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각 단원마다 교육과정상 그 단원에서 추구해야 할 고유한 것들을 신는 것만 해도 양이 넘쳐나기 때문에 정보윤리나 저작권 보호 측면에 대한 교육내용을 고려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가 된다고 하겠다. 다만, 6학년 2학기에 편제되어 있는 준법 관련 단원에서는 저작권 보호 교육내용이 실릴 수도 있으나, 이는 차후 편찬위원회에서의 개발 과정을 두고 보아야 알 수 있겠다.

(2) 교과용 도서 수준에서의 개선 방향

정보윤리교육과 관련해서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교과용 도서에서 2개 단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양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다루어지는 내용의 종류와 범위 및 질과 심도에 있어 얼마나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양상을 보면, 네티켓과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대처의 일부 정도를 다루고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 및 정보사회의 의미와 특징, 정보사회의 빛과 그림자, 정보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삶을 위한 가치관 형성 및 행위 규범에 대한 내용은 물론, 정보윤리학에 기반을 둔 행위의 기본원리와 가치규범, 주요 덕목,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대처 등에 대한 교육이 균형 있게 강화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교과용 도서에서도 저작권 관련 교육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보윤리나 법교육을 다루는 단원에서 현재보다는 비중을 늘려 저작권 보호 관련 교육내용이 다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그 양적 정도는 단원 수준까지는 어렵더라도 특정 단원의 차시 수준에서는 저작권 보호 교육 관련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효성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본다.

또한 저작권 보호 관련 교육내용의 균형 있는 지도 역시 중요하게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즉, 앞의 저작권 보호 교육의 내용체계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올바른 가치의식과 태도, 저작권 및 그 보호에 관한 제도,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 방법,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저작권 문제에 대한 바른 판단과 행동 등 여러 영역에서의 교육이 가급적 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V. 맺 음 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정보윤리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양질의 교육을 효과적이고도 충실히 실행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터하여 초등 바른생활과 및 도덕과에서 정보윤리 및 저작권 보호 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짚어보고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제 앞에서 논의한 바 외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한두 가지 점들에 대해 더 이야기 하면서 맺음말에 갈음하고자 한다.

초등 도덕과에서 교과용 도서를 개발함에 있어 정보윤리 및 저작권 보호 관련 교육을 그것과 직결되는 단원에서만 다루려 하지 말고 여타 단원에서도 관련지어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즉, 교육과정상 실행하게 되어 있는 정보윤리 관련 2개의 단원과 준법 관련 1개의 단원 외에서도 정보윤리교육과 저작권 보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 때 그 이루어질만한 단원을 보면 교육과정상 3학년의 소중한 나의 삶, 4학년의 정직한 삶,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는 삶, 약속을 지키는 삶, 공중도덕, 5학년의 반성하는 삶, 참된 아름다움, 이웃 간의 도리와 예절, 그리고 6학년의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감, 용기있는 행동, 긍정적인 행동,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삶 등에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교사용 지도서에 정보윤리 및 저작권 관련 이론과 실제, 자료 등을 더욱 풍부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제7차 바른생활과 및 도덕과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물론 2007 교육과정에 의한 교사용 지도서에서도 정보윤리 및 저작권 관련 지식과 정보, 자료 등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후자로 갈수록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하나는 교과서 및 생활의 길잡이 상에 등장해 있는 정보윤리 및 저작권 보호 관련 교수·학습을 잘 실행해 가는데 지장을 주게 된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관심 있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데 한계를 지니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및 생활의 길잡이를 개선하는 일에 더하여 교사용 지도서 측면에서도 또한 정보윤리교육 및 저

72 2009 추계 법과 인권교육 공동 학술 발표회(주제발표4)

작권 보호 교육과 관련한 교수·학습 자료, 교사 연수 자료, 자율 장학 자료 등이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보윤리와 저작권 보호 및 그 관련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를 개선하고 증대시키는 일이 절실히 요구된다. 흔히 말하듯이 교육은 교사의 질을 높지 못하는 바, 이는 정보윤리교육 및 저작권 보호 교육 측면에서도 예외 없이 맞는 말이 된다. 따라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정보윤리 및 저작권 보호 관련 능력과 자질을 제대로 기르려 한다면 무엇보다도 그와 관련한 교사의 전문성 및 지도력 증대를 위한 노력이 체계적이고도 집중적으로 기울여져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도덕교육 관련 연수는 물론 여타 교원 연수과정과 직전 교육 과정 등에서 정보윤리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교사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주제발표 5]

초등 도덕교육에서의 준법교육 강화 방안

서 강 식(공주교대)

- I. 들어가며
- II. 초등학교에서의 준법 교육의 방향
- III. 초등 도덕교육을 통한 준법 교육 방안
- IV. 맺으며
- * 참고문헌

I. 들어가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자 정치적 동물이라 한다. 흔히 듣는 이 말은 사람은 홀로 살기보다는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물론 사람은 얼마든지 홀로 살 수도 있다. 그러나 홀로 사는 것보다는 더불어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편하고 생존에 유리하다. 이런 점에서 사람들이 홀로 살기 보다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살기를 선택하는 경향을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더불어 사는데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면서도 동시에 그 속에서 홀로 살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앞으로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래서 이에 따라 사회가 발전할수록 준법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농업사회,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정보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했다고들 이야기한다. 농업사회는 대가족제도를 기반으로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이 주를 이루었고, 공동체 중심으로 생활을 영위해 나갔다. 사람들의 법과 질서의 준수는 가정과 지역사회라는 공동체가 큰 역할을 감당해서 오늘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진 편이다.

74 2009 추계 법과 인권교육 공동 학술 발표회(주제발표5)

산업사회에 이르러서는 핵가족이 중심이 되고 기술집약적 생산방식주의 주를 이루게 되었고, 사람들은 회사, 공장, 학교, 공공기관, 단체 등의 조직체를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때의 공동체는 기능과 이익 중심의 공동체로서 합리적 이성을 근간으로 하여 법과 질서의 준수를 주장하게 되었다. 가정과 지역사회라 법과 질서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법과 질서 유지의 주요 수단은 준법의 당위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준법 위반에 대한 응징이라 할 수 있다.

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에서 당연시 되었던 공동체 구성원의 대면이 약화되고 있다. 동시에 현실공간에서의 준법 못지않게 가상공간에서의 준법 역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현실공간은 공동체와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의 압력이 사람들의 준법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압력수단이었는데, 가상공간은 그러한 압력이 사라지면서 거의 개인의 준법에 대한 자율적 실천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리고 더불어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 준법 교육은 더더욱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더 절실하게 인식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하에서는 준법교육의 가장 초석이 되는 유치원 시기를 지난 초등학교 학생들의 준법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초등학교에서의 준법 교육의 방향

초등학교에서 교과교육과 더불어 병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교육의 종류는 수십 가지가 된다. 발표자가 근래 어디서 글을 읽다가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깜작 놀랐다. 그런데 자세히 그 면모를 따져보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사회가 발달하고 복잡해짐에서 따라 학생들에게 수행해야 할 교육의 종류도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웠다. 그 중에서 인상적인 몇 개를 나열하면, 진로교육, 보건교육, 성교육, 창의성교육, 환경교육,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교육, 음주 및 흡연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인권교육, 평화교육, 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이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준법교육을 살짝 엿어본다.

국민공통기본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의 10개 교과이다. 조선시대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교육은 사람됨을 가꾸는 것, 즉 덕과 인격을 도야하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다. 글을 잘 읽고 글을 잘 짓고, 경전을 잘 이해하고 암송하고 풀이하고, 시를 잘 짓고, 경전을 잘 풀이하고,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고, 그림을 잘 그리고, 거문고를 잘 연주하는 것 등

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군자라는 인간을 기르고자 하였다. 그러던 것이 근대화의 물결을 타고 근대식 학교가 설립되면서 학교에서는 교과를 가르치게 되었고, 교과는 관념적으로 이상적 인간상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지만 실제로는 단위 시간에 이루어지는 수업을 중시하게 되었다. 단위 시간에 이루어지는 수업은 결국 교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분화된 단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 와중에서 우리가 교육의 궁극적 목표로 했던 인격이나 덕의 도야는 사라져 버렸다. 즉 학교교육은 교과교육 중심이 되어 버렸고, 교과교육은 교과 성적의 향상이라는 피상적 목표에 매달리게 되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교과교육에 들지 못하면서도 실제로 학교교육을 통해 수행되어야 할 많은 중요한 교육들이-앞서 살짝 단초만 예시한 것처럼 많은데-학교 현장에서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교육의 핵심은 교과교육이며 수업이므로 수업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교육은 생색조차 내기 어렵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하루 종일 담임선생님과 교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초등학교보다 매 시간 교과 선생님이 바뀌는 중고등학교에서 매우 심각하다.

만약 우리가 준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준법교육이 학교현장에서 강화되어야 한다고 외친다면 자칫 앞서 나열한 많은 교육에다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교육을 보태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외침은 공허해지고 학교현장에서의 실제적인 교육수행은 허공을 가로지르는 메아리에 그치고 말 공산이 크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준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발표자는 오늘날 초등학교 현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실제적으로 수행 가능한 준법교육의 방향이 무엇일까 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즉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선언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권고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현장에서 준법교육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방안과 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준법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 당위성 등에 관해 분명한 인식을 갖도록 연수를 강화하는 것이 준법교육의 강화에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수활동은 준법교육 강화 방안이나 프로그램보다 실제적으로 더욱 초등학교 현장에서 준법교육의 강화를 가져올 수 있다. 교사들이 준법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할 때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이에 동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직사회의 특성을 감안할 때 밀어붙이기식보다는 교사들의 이해를 구할 때, 그리고 이에 토대하여 동참을 설득하고 유도할 때, 교사들의 자율성을 보장할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교사들이 준법교육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초등학교 교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 중에서 준법교육과 연

76 2009 추계 법과 인권교육 공동 학술 발표회(주제발표5)

관된 활동에 대해 준법교육을 수행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준 한다. 즉 교사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교육에서 준법교육을 수행해야 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 중에서 준법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찾아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그런 교육활동이 준법교육의 수행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교육활동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준법을 목표로 하여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목표 도달 여부를 형성평가 등을 통하여 측정하게 한다.

셋째, 다양한 교육활동 중에서 준법교육이 우선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중에서 그 무엇보다도 초등학교 교사들이 손쉽게 준법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법교육 방안과 프로그램, 그리고 자료들이 개발, 보급 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교사들은 수업 이외에 많은 과중한 업무로 시달린다. 그러므로 교사들이 스스로 준법교육과 관련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므로 준법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준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자료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준법교육 활동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방법들을 많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런 경험과 방법들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준법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감하고 준법교육을 제대로 해 보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프로그램과 자료 다음에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준법교육 수행의 경험에서 비롯된 다양한 경험과 지혜 등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현장 교사들이 손쉽게 접해 실제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 연구회 등에 대한 지원과 카페나 사이트 등이 개설되면 더욱 바람직하다.

3. 초등도덕교육을 통한 준법 교육 방안

발표자는 초등도덕교육을 통한 준법 교육 방안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자 한다. 즉 도덕과 수업을 통한 방안, 학급 및 학교생활을 통한 방안, 지역 및 가정과 연계한 방안 등이다.

1. 도덕과 수업과 연계된 방안

1) 교재의 준비

< 표 1> 준법 관련 교재 준비 예시

- 준법정신을 기르기 위한 자료 개발과 활용
- 가치 갈등 교재 개발
- 준법과 연관된 가치 딜레마 교재 개발
- 역할극 자료의 교재화
- 준법과 연관된 실천적 감동감화자료 개발 및 적용
- NIE 학습자료 개발 및 적용
- 준법 함양과 의식 고취를 위한 이야기 자료 지도개발
- 동화의 준법 요소 분석을 통한 준법 학습 자료 개발
- 고전 및 명작의 준법 요소 분석을 통한 준법 학습 자료 개발
- 준법과 연계된 극화 학습자료
- 준법 및 질서 부적응아동 예방과 교정을 위한 다양한 자료 개발과 활용
- 동양 고전의 준법 지도 교재화
- 준법 관련 연극 지도 자료 개발
- 준법과 연관된 라디오 방송 등의 방송 대본 자료 개발
-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자료 및 인터넷 동영상 자료 개발 및 활용
- 사이버 공간에서의 준법 지도 자료 개발
- 인터넷 준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 준법 관련 자작 UCC 자료 수집 및 활용 프로그램 개발

2) 토론수업

(1) 토론의 형태

집단 토론 학습은 준법정신의 함양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러한 토론 수업의 목적에 따른, 그리고 목적에 따fms 토론의 형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문제해결 및 탐구 중심의 토론

모둠별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절차는 모둠별 및 학급 전체 토론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형태의 토론은 모둠별 탐구 과제 분담, 모둠에게 주어진 문제 이해를 위한 토론, 가설 및 문제 해결의 방향 탐색을 위한 토론, 개인별 탐구과제를 분담을 위한 토론, 탐구의 수행(가설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증거 수집), 증거 해석을 위한 토론, 결론 도출을 위한 토론, 모둠별 탐구 결과 발표를 위한 토론, 종합 정리 및 반성을 위한 학급 전체의 토론 등의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② 워크숍을 위한 토론

이 형태의 토론은 탐구 계획서 작성하기, 보고서 작성하기 등의 활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이 형태의 토론 진행절차는 모둠의 공동과제 인식을 위한 토론, 모둠의 공동과제 해결 방법 및 절차 협의, 개인별 과제 분담을 위한 토론 및 준비물 점검 확인, 개인별 과제 수행, 개인별 과제 수행 결과 발표, 개인별 과제 결과의 종합 정리, 과제 결과 및 진행 과정 반성을 위한 토론, 각 모둠별 공동과제 해결 결과의 발표 및 평가. 보고서 전시회 등으로 이루어진다.

③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위한 토론

이 형태의 토론은 모둠에서 집중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태로서 진행 절차는 모둠의 공동 과제 확인, 전체 문제 해결의 방법의 모색을 위한 토론, 개인별 머리 짜내기, 개인별 아이디어 발표, 모둠 공동과제 과제 해결 방안에 관한 종합 토론, 문제 해결 방안 보고서 작성, 학급 전체의 집단 해결 방안 발표 및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④ 짝별 토론

주어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개별적으로 사고를 하되 공동 사고의 이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살리기 위한 토론 방식이다. 학급 전체가 해결해야 할 대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위 주제가 몇 개로 세분된 경우 이와 같은 형태의 토론이 유용하다. 대주제 해결을 위한 하위 주제 하나 하나에 번호가 주어지고 모둠이 구성된다. 각 모둠에서는 대주제 해결을 위해 각 모둠에게 부여된 소주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짝과 공동으로 협의한다.

짝과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어 대주제의 기본적인 해결방향이 설정된 후에는 모둠으로 돌아와 모둠에서 다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어느 정도 방향이 모색되면 다시 짝과 더 상세하게 협의하고, 짝과의 협의가 끝나면 다시 모둠으로 모여 토론한다. 짝별 토론은 이와 같은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대주제의 해결방안을 짧은 시간 내에 모색하는 형태의 토론이다.

⑤ 버즈(buzz) 토론

대략 6명 정도의 모둠이 6분 정도의 시간 동안 한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한다고 하여 ‘6-6법’이라고도 하는데, 모둠의 토론소리가 마치 벌이 웅웅거리는 소리 같다고 하여 흔히 버즈 토론이라고 한다. 짝과의 토론을 시작으로 하여 모둠으로, 그리고 전체로 공동 토론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이 형태의 토론 역시 소수 인원으로 모둠을 형성하여 토론자 상호 간의 친밀성을 갖게 하며 모든 구성원에게 최대한의 발언 기회를 줌으로써 토론에의 참여를 극대화하고 토론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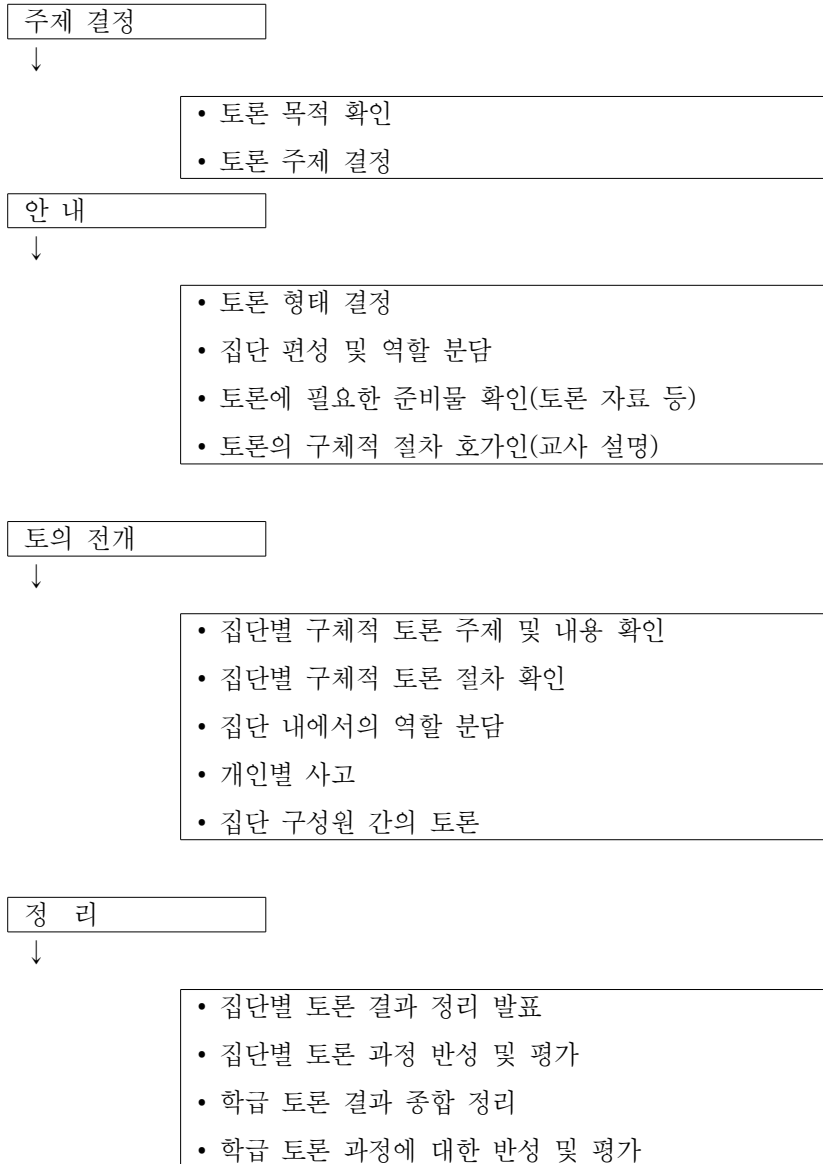
⑥ 게임·모의 상황·역할놀이 상황에서의 토론

이 형태의 토론은 게임·모의 상황·역할놀이 상황 등을 실시하면서 토론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진행 절차는 게임·모의 상황·역할놀이 상황 설정 및 학습 목표 확인, 역할문답과 준비물 갖추기, 게임·모의 상황·역할놀이 상황 시연, 게임·모의 상황·역할놀이 상황의 시연에 대한 토론, 반성 및 평가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80 2009 추계 법과 인권교육 공동 학술 발표회(주제발표5)

(2) 토론의 일반적 절차

[그림 1] 토론의 일반적 절차



<표 2> 토론을 활용한 준법 지도 예시

- 가치갈등 사태에 대한 의사 결정 중심의 탐구학습을 통한 준법에 관한 바른 판단력 함양
- 가치갈등 모의 법 자료 활용을 통한 준법정신 및 태도, 행위 능력 함양
- 역할 연출의 집단토의 학습을 통한 준법정신 함양
- 역할극 학습을 통한 준법정신과 준법 태도 개발
- 준법 실천의지 함양을 위한 모범사례 중심 역할놀이 적용
- 준법 추구 문답식 학습을 통한 준법정신 및 태도 함양
- 가치갈등 모의 법 자료 활용을 통한 준법정신 및 태도, 행위 능력 함양
- 사회문제 토의학습을 통한 준법의 내면화
- Mind Map 기법을 활용한 토의학습을 이용한 준법 판단 능력 함양 및 내면화
- 준법과 연관된 가치갈등 체험사례 탐구를 통한 준법정신 함양
- 신문 교재화 중심의 준법가치 탐구활동을 통한 준법 내면화
- 반규범적 행동의 토론학습 적용을 통한 준법 내면화
- 모의상황의 구성 적용이 준법정신 함양에 미치는 영향
- 가치갈등 교재의 역할극 학습을 통한 준법정신 신장
- 오늘날의 사회적 쟁점에 대한 토론을 통한 준법 지도

3) 토론 이외의 다양한 수업 모형 적용을 통한 준법 지도

< 표 3> 토론 이외의 여러 수업 모형을 통한 준법 지도 예시

- 명언의 자기화 자료적용을 통한 준법정신 함양
- 준법행위실천을 위한 자기감정이입이 인지와 행동의 괴리극복 지도
- 자기진단평가자료 활용을 통한 준법 행위 실천력 강화
- 자기성찰시간 운영을 통한 준법
- 기본준법 행동 지도를 통해
- 체험가치 자기 보고를 통한 준법 지도
- 체험중심의 실천적 활동을 통한 준법 행위 촉진
- 준법 관련 TV교육방송활용 지도
- 소집단별 역할놀이 수업 모형 활용을 통한 준법정신 함양
- 집단상담프로그램과 역할놀이의 토의학습을 통한 준법 내면화

- 준법과 관련된 논술지도
- 소집단의 공동과제 해결학습을 통한 공동체 준법 의식 내면화
- 집단탐구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준법 지도
- 창의적인 심상표현활동을 통한 준법정신 내면화
- 준법의 습관화를 위한 토론 강화
- 논술과제를 통한 준법과 연관된 가치 판단 능력 함양
- 테마가 있는 체험학습을 통한 소집단별 인성교육으로서 준법실천의지 함양 지도
- 문제해결 시나리오 온라인 토론 활동을 통한 준법 지도
- 정보통신윤리와 연관된 준법문제 토의학습을 통한 준법 지도
- 칭찬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준법 지도
- 심리역할극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준법 지도
- 준법 추구 문답식 학습이 준법정신 및 태도 함양

2. 학급 및 학교생활을 통한 방안

<표 4> 학급 및 학교생활을 통한 준법 지도 방안 예시

- 준법 정의 공동체의 학교수준에서의 적용
- 준법 정의 공동체의 학급 수준에서의 적용
- 사회적 강화를 통한 준법 행위 실천 및 내면화 지도
- 생활체험 재연 모델 기법을 적용한 도덕적 행동 촉진

3. 지역 및 가정과 연계한 방안

<표 5> 지역 및 가정과 연계한 준법 지도 방안 예시

- 가정과의 연계지도를 프로그램을 통한 준법
- 준법 규범별 알림장 개발·활용을 통한 준법 행동 실천력 함양

4. 맺으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세계 12위 정도의 교역규모를 가진 경제대국이다. 이에 걸맞게 우리의 준법 의식도 선진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준법의식 등의 정신적 발달은 물질적 발달을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도 준법의식을 비롯한 정신적 수준의 발달이 시급한 실정이라 생각한다. 준법의식 등의 정신적 가치는 특히 어릴수록 그 교육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표자가 초등학교 준법교육 강화방안으로 살펴보고자 노력한 것은 초등학교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실제적으로 도덕 및 사회 등의 교과 교육을 비롯한 학교 교육 활동에서 이루어질 수 방안이었다. 이제는 선언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만 수행되는 교육 방안을 탈피하고 우리 모두가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울 것은 있는 그래도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부터 찾아 시행하려고 노력하는, 즉 관념과 현실의 불일치를 극복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현재의 수업에서 가능한 것이 토론 수업이 준법과 관련된 판단 능력을 함양하고 준법 의식을 일깨우며 나아가 준법의 실천과 습관화를 위한 동기부여와 실천 의지 강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토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교실에서 학급담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학급 공동체와 학교 공동체를 준법 정의 공동체로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하에 자치회적으로 준법과 관련한 규칙을 제정하고 학생들 스스로 실천을 규제하며 학생들 스스로 준법위반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제재를 정하고 시행하는 데에서 준법의 생활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준법과 관련한 학교 교육의 성패 여부는 지역사회와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 습득한 것이 가정을 비롯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지도될 때 준법 의식화내지 내면화가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나아가 준법의 실천내지는 준법 행동이 인격으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지면과 시간 관계상 수업과 관련된 토론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고 학급과 가정은 아이디어 제시 수준에 머물렀음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오늘 두 학회가 함께 모여 준법교육의 강화를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 준법정신의 선진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자리와 이러한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학계, 그리고 교육계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보다도 더욱 질서와 법치가 확립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2009 추계 법과 인권교육 공동 학술 발표회 자료집
법치주의와 학교 법교육의 과제 |

2009년 10월 24일 인쇄
2009년 10월 24일 발행

발행처 /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서울교육대학교 법교육연구소
한국 초등도덕교육학회
발행자 / 허 종 열 · 조 강 모
편집인 / 송 민 구

(137-742)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로 161(서초동 1650번지)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사무국
Tel: 02-3475-2431
E-mail: korkhlea@gmail.com
Homepage: <http://www.khlea.org>

인쇄처 / (주) 세원문화사
Tel: 02-2265-1141
